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입주자모집공고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554-38 일원(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0블록)

■ 공급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593세대 (전용면적 84㎡ 419세대, 101㎡ 174세대)

【코로나19 관련 주택홍보관 운영 안내 사항】

■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은 사이버 주택전시관으로(www.elife.co.kr) 대체하여 운영됩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및 계약체결 기간에 한하여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사전 예약 후 주택홍보관 방문이 가능하며 주택홍보관 내 전시된 마감재, 모형도 등 관람이 가능 합니다.

※ 주택홍보관 방문은 당첨자 및 계약자만 입장이 원칙이며(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방문은 사이버 주택전시관(www.elife.co.kr)을 통해 사전 예약하여 주택홍보관 방문가능기간(당첨자 서류접수 기간, 계약체결 기간 등) 동안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주택홍보관 방문이 불가한 점 양지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방문인원의 축소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당사가 고지한 해당 기간 및 운영시간 외에는 주택홍보관 방문이 불가합니다.

■ 주택홍보관 방문 기간 내 방문 시 아래의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주택홍보관 입장 시 마스크 미착용
- ※ 주택홍보관 입장 시 체온측정 온도가 37.5도가 넘을 경우
- ※ 주택홍보관 입장 시 손 소독, 체온측정 등의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 방문자 본인이 현재 자가격리대상자이거나, 가족 혹은 일상적 접촉이 잦은 지인 중에 자가격리대상자가 있는 경우
- ※ 예약한 방문날짜 또는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기타 주택홍보관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주택홍보관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주택홍보관 내 분양 상담전화(☎1644-8228) 등을 통해 분양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 폭주로 인하여 상담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가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과 관련하여 주택홍보관 내 상담 및 전화상담은 고객 여러분들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을 모두 반영하여 상담하기가 어렵고, 제한된 정보의 제공으로 인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반드시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와 한국부동산원(청약홈)을 통해서 청약자격, 제한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관련하여서는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고 주민등록표 등 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당 사업지는 **현상설계공모 당시 SH지침에 의해 견제율, 용적률, 인동거리, 평균 층수 등에 대한 완화를 인정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2020-16-3)에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동간격이 축소되고, 평균 층수가 상향되어 일조가 불리해질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10.(금)입니다.(청약 자격조건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무주택기간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서울특별시 강동구)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의 100%를 가점제로, 주택형 85㎡ 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과거 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첨된 청약동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		
- 도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 이전가산권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 이하	5년
		85㎡ 초과	3년
	그 외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10.)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내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서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및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한 대규모주택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10.)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2019.09.10. 이전부터 계속거주)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해당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서울특별시 거주기간 산정 시 서울특별시 내에서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인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 제4호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1.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부모, 장남·장녀, 사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 전혼자녀 등)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부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임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려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을 말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일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필요	다자녀 필요	신혼부부 필요	노부모부양 필요	생애최초 필요	1순위 필요	2순위 필요
청약통장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1순위,24개월이상,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1순위,24개월이상,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1순위,24개월이상,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정책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은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②**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③금융인증서 또는 ④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에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등·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공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보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주택홍보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단, 주택홍보관 현장접수시에는 모든 자격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인터넷 청약 가능시간(08:00~17:30)과 현장 접수 가능시간(주택홍보관 10:00~14:00)이 다르니 접수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한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1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④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과열지역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1순위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에게 공급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구입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하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elife.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용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강동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전매 금지, 거주 의무 및 재당첨 제한 등 (항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전매 금지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법 시행령」 제 73조
거주 의무	최초 입주 가능일	5년	「주택법 시행령」 제 60조의2
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

- ※ **전매 금지**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수도권 공급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1.10.06.)부터 10년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 사업 주체는 「주택법」제64조 제4항, 제5항에 따라 본 주택의 소유권을 전매제한기간 내에는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지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명기합니다.
- ※ **거주 의무** : 본 아파트는 수도권 공급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법」 제57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5년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단,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90일까지입니다.)
 - 사업 주체는 거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 등기하며,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거주무자가 거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함”을 명기하며, 거주무자는 거주무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함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2항 제2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해의 채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단,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확인을 받아야 함.) 거주무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금액은 수분양자가 한도한 입주금 중 연체금 등 공제할 금액이 있을 경우 공제할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3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거주무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주무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거주무대상자들은 모든 세대의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간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당첨일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일로부터 10년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청약 제한 :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분은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청약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가점제 당첨 제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적용)
- ※ 전매 금지, 거주 의무, 재당첨 제한 및 가점제 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항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족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몰무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적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	계약체결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일 정	2021.09.27(월)	2021.09.28(화)	2021.09.29(수)	2021.10.06(수)	2021.10.11(월) ~ 10.20(수)	2021.10.25(월) ~ 11.03(수)
방 법	인터넷 청약(08:00 ~ 17:30)			개별초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초회 가능)	■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주택홍보관 방문 접수 - 사전방문예약제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장 소	■ 당사 주택홍보관(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주택홍보관 -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29길 5-6, F동 4층	



- ※ 고려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주택홍보관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바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1. 공급규모 및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 33661호(2021.09.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554-38 일원(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0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2층, 지상 5~27층 6개동, 총 59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기관추천 특별공급 34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4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77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54세대 포함]
- 입주예정시기 : 2024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수)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용)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516	01	084.0964A	84A	84.0964	26.9471	111.0435	54.9315	165.9750	55.4439	56	5	5	11	1	8	30	26	2
		02	084.0964B	84B	84.0964	26.9471	111.0435	54.9315	165.9750	55.4439	28	2	2	5	-	4	13	15	4
		03	084.8514C	84C	84.8514	26.9883	111.8397	55.4247	167.2644	55.9417	10	1	1	2	-	1	5	5	-
		04	084.0835D	84D	84.0835	26.9593	111.0428	54.9231	165.9659	55.4354	108	10	10	21	3	16	60	48	-
		05	084.2087E	84E	84.2087	27.3176	111.5263	55.0050	166.5313	55.5179	19	1	1	3	-	2	7	12	6
		06	084.2087F	84F	84.2087	27.3176	111.5263	55.0050	166.5313	55.5179	11	1	1	2	-	1	5	6	1
		07	084.1277G	84G	84.1277	25.9654	110.0931	54.9520	165.0451	55.4645	22	2	2	4	-	3	11	11	2
		08	084.0593H	84H	84.0593	25.9062	109.9655	54.9073	164.8728	55.4194	1	-	-	-	-	-	-	1	-
		09	084.0505I	84I	84.0505	25.3018	109.3523	54.9016	164.2539	55.4136	35	3	3	7	1	5	19	16	3
		10	084.3580J	84J	84.3580	27.6679	112.0259	55.1025	167.1284	55.6164	4	-	-	-	-	-	-	4	-
		11	084.2924K	84K	84.2924	27.8479	112.1403	55.0596	167.1999	55.5731	30	3	3	6	-	4	16	14	-
		12	084.2718L	84L	84.2718	26.2608	110.5326	55.0461	165.5787	55.5595	30	3	3	6	-	4	16	14	-
		13	084.4162M	84M	84.4162	26.9541	111.3703	55.1404	166.5107	55.6547	11	1	1	2	-	1	5	6	-
		14	084.2515N	84N	84.2515	27.9325	112.1840	55.0329	167.2169	55.5462	16	1	1	3	-	2	7	9	-
		15	084.0536O	84O	84.0536	28.0061	112.0597	54.9036	166.9633	55.4157	12	1	1	2	-	1	5	7	-
		16	084.2410P	84P	84.2410	30.2844	114.5254	55.0260	169.5514	55.5392	4	-	-	-	-	-	-	4	1
		17	084.2410Q	84Q	84.2410	30.2844	114.5254	55.0260	169.5514	55.5392	2	-	-	-	-	-	-	2	-
		18	084.5069R	84R	84.5069	26.1906	110.6975	55.1997	165.8972	55.7145	7	-	-	1	-	1	2	5	-
		19	084.0754S	84S	84.0754	27.3795	111.4549	54.9178	166.3727	55.4301	8	-	-	1	-	1	2	6	-
		20	084.0941T	84T	84.0941	27.8453	111.9394	54.9301	166.8695	55.4424	5	-	-	1	-	-	1	4	-
		21	101.0619A	101A	101.0619	30.4795	131.5414	66.0134	197.5548	66.6291	32	-	-	-	-	-	-	32	2
		22	101.0532B	101B	101.0532	32.9924	134.0456	66.0076	200.0532	66.6233	36	-	-	-	-	-	-	36	-
		23	101.0459C	101C	101.0459	32.1590	133.2049	66.0030	199.2079	66.6185	48	-	-	-	-	-	-	48	-
		24	101.0327D	101D	101.0327	31.7676	132.8003	65.9942	198.7945	66.6098	36	-	-	-	-	-	-	36	-
		25	101.0804E	101E	101.0804	31.8332	132.9136	66.0255	198.9391	66.6413	16	-	-	-	-	-	-	16	-
		26	101.0797F	101F	101.0797	33.2587	134.3384	66.0251	200.3635	66.6408	6	-	-	-	-	-	-	6	-
합 계											593	34	34	77	5	54	204	389	21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84.0964A	084.0964B	084.8514C	084.0835D	084.2087E	084.2087F	084.1277G	084.0593H	084.0505I	084.3580J	084.2924K	084.2718L	084.4162M
약식 표기	84A	84B	84C	84D	84E	84F	84G	84H	84I	84J	84K	84L	84M
사업승인시 주택표기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84.2515N	084.0536O	084.2410P	084.2410Q	084.5069R	084.0754S	084.0941T	101.0619A	101.0532B	101.0459C	101.0327D	101.0804E	101.0797F
약식 표기	84N	84O	84P	84Q	84R	84S	84T	101A	101B	101C	101D	101E	101F
사업승인시 주택표기	84DU1	84DU2	84DU3	84DU4	84DU5	84DU6	84DU7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01DU

■ 공통 유의사항

-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바랍니다.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을 포함한 기타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balconi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최형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라인)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종도금(80%)						잔금(2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21.12.15	2022.04.15	2022.08.16	2022.12.15	2023.06.15	2023.08.15	입주자정당	
84A	56	1001동 28,33호	1층	2	355,723,000	419,617,000	-	775,340,000	155,068,000	77,534,000	77,534,000	77,534,000	77,534,000	77,534,000	77,534,000	77,534,000	155,068,000
		1002동 13,24호	2층	2	355,723,000	424,345,000	-	780,068,000	156,013,600	78,006,800	78,006,800	78,006,800	78,006,800	78,006,800	78,006,800	78,006,800	156,013,600
		1001동 28,33호 1002동 1호 1003동 2호 1004동 2호 1005동 2호	2층	6	355,723,000	427,497,000	-	783,220,000	156,644,000	78,322,000	78,322,000	78,322,000	78,322,000	78,322,000	78,322,000	78,322,000	156,644,000
		1002동 13,24호	3층	2	355,723,000	432,225,000	-	787,948,000	157,589,600	78,794,800	78,794,800	78,794,800	78,794,800	78,794,800	78,794,800	78,794,800	157,589,600
		1001동 28,33호 1002동 1호 1003동 2호 1004동 2호 1005동 2호	3층	6	355,723,000	435,376,000	-	791,099,000	158,219,800	79,109,900	79,109,900	79,109,900	79,109,900	79,109,900	79,109,900	79,109,900	158,219,800
		1002동 13,24호	4층~9층	12	355,723,000	440,104,000	-	795,827,000	159,165,400	79,582,700	79,582,700	79,582,700	79,582,700	79,582,700	79,582,700	79,582,700	159,165,400
		1001동 28,33호 1002동 1호 1003동 2호 1004동 2호 1005동 2호	4층~9층	22	355,723,000	443,256,000	-	798,979,000	159,795,800	79,897,900	79,897,900	79,897,900	79,897,900	79,897,900	79,897,900	79,897,900	159,795,800
		1002동 13,24호	10층~11층	4	355,723,000	450,347,000	-	806,070,000	161,214,000	80,607,000	80,607,000	80,607,000	80,607,000	80,607,000	80,607,000	80,607,000	161,214,000
		1001동 1,3,5,7호	1층	4	355,723,000	419,617,000	-	775,340,000	155,068,000	77,534,000	77,534,000	77,534,000	77,534,000	77,534,000	77,534,000	77,534,000	155,068,000
		1001동 1,3,5,7호 1006동 1호	2층	5	355,723,000	427,497,000	-	783,220,000	156,644,000	78,322,000	78,322,000	78,322,000	78,322,000	78,322,000	78,322,000	78,322,000	156,644,000
84B	28	1001동 1,3,5,7호 1006동 1호	3층	5	355,723,000	435,376,000	-	791,099,000	158,219,800	79,109,900	79,109,900	79,109,900	79,109,900	79,109,900	79,109,900	79,109,900	158,219,800
		1001동 1,3,5,7호 1006동 1호	4층~6층	14	355,723,000	443,256,000	-	798,979,000	159,795,800	79,897,900	79,897,900	79,897,900	79,897,900	79,897,900	79,897,900	79,897,900	159,795,800
		1002동 23호	2층	1	358,917,000	418,808,000	-	777,725,000	155,545,000	77,772,500	77,772,500	77,772,500	77,772,500	77,772,500	77,772,500	77,772,500	155,545,000
		1002동 23호	3층	1	358,917,000	426,744,000	-	785,661,000	157,132,200	78,566,100	78,566,100	78,566,100	78,566,100	78,566,100	78,566,100	78,566,100	157,132,200
		1002동 23호	4층~9층	6	358,917,000	434,680,000	-	793,597,000	158,719,400	79,359,700	79,359,700	79,359,700	79,359,700	79,359,700	79,359,700	79,359,700	158,719,400
84C	10	1002동 23호	10층~11층	2	358,917,000	444,997,000	-	803,914,000	160,782,800	80,391,400	80,391,400	80,391,400	80,391,400	80,391,400	80,391,400	80,391,400	160,782,800
		1001동 30,31호 1002동 11호	2층	3	355,669,000	420,454,000	-	776,123,000	155,224,600	77,612,300	77,612,300	77,612,300	77,612,300	77,612,300	77,612,300	77,612,300	155,224,600
		1001동 2,4,6,8호	2층	4	355,669,000	423,606,000	-	779,275,000	155,855,000	77,927,500	77,927,500	77,927,500	77,927,500	77,927,500	77,927,500	77,927,500	155,855,000
		1001동 15,16,17, 26,30,31,32호 1002동 11,25,26호	3층	10	355,669,000	428,334,000	-	784,003,000	156,800,600	78,400,300	78,400,300	78,400,300	78,400,300	78,400,300	78,400,300	78,400,300	156,800,600
		1001동 2,4,6,8호	3층	4	355,669,000	431,486,000	-	787,155,000	157,431,000	78,715,500	78,715,500	78,715,500	78,715,500	78,715,500	78,715,500	78,715,500	157,431,000
84D	108	1001동 15,16,17,26, 30,31,32호 1002동11,25,26, 27호	4층~9층	53	355,669,000	436,213,000	-	791,882,000	158,376,400	79,188,200	79,188,200	79,188,200	79,188,200	79,188,200	79,188,200	79,188,200	158,376,400
		1001동 2,4,6,8,20,21호	4층~9층	18	355,669,000	439,365,000	-	795,034,000	159,006,800	79,503,400	79,503,400	79,503,400	79,503,400	79,503,400	79,503,400	79,503,400	159,006,800
		1001동 15,16,17,30, 31,32호 1002동11,25,26, 27호	10층~11층	14	355,669,000	446,457,000	-	802,126,000	160,425,200	80,212,600	80,212,600	80,212,600	80,212,600	80,212,600	80,212,600	80,212,600	160,425,200
		1001동 20,21호	10층	2	355,669,000	449,608,000	-	805,277,000	161,055,400	80,527,700	80,527,700	80,527,700	80,527,700	80,527,700	80,527,700	80,527,700	161,055,400
		1001동 30,31호	1층	2	356,198,000	415,391,000	-	771,589,000	154,317,800	77,158,900	77,158,900	77,158,900	77,158,900	77,158,900	77,158,900	77,158,900	154,317,800
84E	19	1001동 2,4,6,8호	1층	4	356,198,000	418,557,000	-	774,755,000	154,951,000	77,475,500	77,475,500	77,475,500	77,475,500	77,475,500	77,475,500	77,475,500	154,951,000
		1002동 25,26호	2층	2	356,198,000	423,305,000	-	779,503,000	155,900,600	77,950,300	77,950,300	77,950,300	77,950,300	77,950,300	77,950,300	77,950,300	155,900,600
		1001동 15,17,30,31,32호	5층	5	356,198,000	439,132,000	-	795,330,000	159,066,000	79,533,000	79,533,000	79,533,000	79,533,000	79,533,000	79,533,000	79,533,000	159,066,000
		1001동 2,4,6,8,20,21호	5층	6	356,198,000	442,298,000	-	798,496,000	159,699,200	79,849,600	79,849,600	79,849,600	79,849,600	79,849,600	79,849,600	79,849,600	159,699,200
		1002동 12호	1층	1	356,198,000	415,391,000	-	771,589,000	154,317,800	77,158,900	77,158,900	77,158,900	77,158,900	77,158,900	77,158,900	77,158,900	154,317,800
84F	11	1002동 12호	2층	1	356,198,000	423,305,000	-	779,503,000	155,900,600	77,950,300	77,950,300	77,950,300	77,950,300	77,950,300	77,950,300	77,950,300	155,900,600
		1002동 12호	3층	1	356,198,000	431,219,000	-	787,417,000	157,483,400	78,741,700	78,741,700	78,741,700	78,741,700	78,741,700	78,741,700	78,741,700	157,483,400
		1002동 12호	4층~9층	6	356,198,000	439,132,000	-	795,330,000	159,066,000	79,533,000	79,533,000	79,533,000	79,533,000	79,533,000	79,533,000	79,533,000	159,066,000
		1002동 12호	10층~11층	2	356,198,000	449,420,000	-	805,618,000	161,123,600	80,561,800	80,561,800	80,561,800	80,561,800	80,561,800	80,561,800	80,561,800	161,123,600
		1002동 3,5호	1층	2	355,855,000	401,131,000	-	756,986,000	151,397,200	75,698,600	75,698,600	75,698,600	75,698,600	75,698,600	75,698,600	75,698,600	151,397,200
84G	22	1002동 3,5호	2층	2	355,855,000	408,943,000	-	764,798,000	152,959,600	76,479,800	76,479,800	76,479,800	76,479,800	76,479,800	76,479,800	76,479,800	152,959,600
		1002동 3,5호	3층	2	355,855,000	416,755,000	-	772,610,000	154,522,000	77,261,000	77,261,000	77,261,000	77,261,000	77,261,000	77,261,000	77,261,000	154,522,000
		1001동 19호 1002동 3,5호	4층~9층	13	355,855,000	424,567,000	-	780,422,000	156,084,400	78,042,200	78,042,200	78,042,200	78,042,200	78,042,200	78,042,200	78,042,200	156,084,400
		1001동 19호 1002동 3호	10층~11층	3	355,855,000	434,723,000	-	790,578,000	158,115,600	79,057,800	79,057,800	79,057,800	79,057,800	79,057,800	79,057,800	79,057,800	158,115,600
		1001동 19호	4층	1	355,566,000	423,952,000	-	779,518,000	155,903,600	77,951,800	77,951,800	77,951,800	77,951,800	77,951,800	77,951,800	77,951,800	155,903,600
84H	1	1002동 15호	1층	1	355,529,000	386,276,000	-	741,805,000	148,361,000	74,180,500	74,180,500	74,180,500	74,180,500	74,180,500	74,180,500	74,180,500	148,361,000
		1001동 9,27호 1002동 15호	1층~2층	3	355,529,000	394,036,000	-	749,565,000	149,913,000	74,956,500	74,956,500	74,956,500	74,956,500	74,956,500	74,956,500	74,956,500	149,913,000
		1001동 9,27호 1002동 2,15,30호	2층~3층	5	355,529,000	401,795,000	-	757,324,000	151,464,800	75,732,400	75,732,400	75,732,400	75,732,400	75,732,400	75,732,400	75,732,400	151,464,800
		1001동 9,27호 1002동 2,15,30호	3층~7층	8	355,529,000	409,555,000	-	765,084,000	153,016,800	76,508,400	76,508,400	76,508,400	76,508,400				



84M	11	1001동 11, 23호 1002동 7호	3층~9층	8	356,465,000	416,877,000	-	773,342,000	154,668,400	77,334,200	77,334,200	77,334,200	77,334,200	77,334,200	77,334,200	154,668,400
		1001동 23호 1002동 7호	4층~9층	12	356,465,000	424,720,000	-	781,185,000	156,237,000	78,118,500	78,118,500	78,118,500	78,118,500	78,118,500	78,118,500	156,237,000
		1001동 11호	10층~11층	2	356,465,000	427,073,000	-	783,538,000	156,707,600	78,353,800	78,353,800	78,353,800	78,353,800	78,353,800	78,353,800	156,707,600
		1001동 23호 1002동 7호	10층~12층	5	356,465,000	434,916,000	-	791,381,000	158,276,200	79,138,100	79,138,100	79,138,100	79,138,100	79,138,100	79,138,100	158,276,200
	16	1002동 21호	2층	1	357,076,000	414,224,000	-	771,300,000	154,260,000	77,130,000	77,130,000	77,130,000	77,130,000	77,130,000	77,130,000	154,260,000
		1002동 21호	3층	1	357,076,000	422,127,000	-	779,203,000	155,840,600	77,920,300	77,920,300	77,920,300	77,920,300	77,920,300	77,920,300	155,840,600
		1002동 21호	4층~9층	6	357,076,000	430,029,000	-	787,105,000	157,421,000	78,710,500	78,710,500	78,710,500	78,710,500	78,710,500	78,710,500	157,421,000
		1002동 21호	10층~12층	3	357,076,000	440,303,000	-	797,379,000	159,475,800	79,737,900	79,737,900	79,737,900	79,737,900	79,737,900	79,737,900	159,475,800
		1002동 16, 17호	4층~8층	6	356,379,000	422,944,000	-	779,323,000	155,864,600	77,932,300	77,932,300	77,932,300	77,932,300	77,932,300	77,932,300	155,864,600
		1002동 18, 19호	4층~8층	6	356,379,000	430,905,000	-	787,284,000	157,456,800	78,728,400	78,728,400	78,728,400	78,728,400	78,728,400	78,728,400	157,456,800
		1002동 16, 17호	10층	2	356,379,000	433,293,000	-	789,672,000	157,934,400	78,967,200	78,967,200	78,967,200	78,967,200	78,967,200	78,967,200	157,934,400
		1002동 18, 19호	10층	2	356,379,000	441,253,000	-	797,632,000	159,526,400	79,763,200	79,763,200	79,763,200	79,763,200	79,763,200	79,763,200	159,526,400
12	1002동 14호	2층	1	355,542,000	407,810,000	-	763,352,000	152,670,400	76,335,200	76,335,200	76,335,200	76,335,200	76,335,200	76,335,200	152,670,400	
	1002동 29호	2층	1	355,542,000	410,991,000	-	766,533,000	153,306,600	76,653,300	76,653,300	76,653,300	76,653,300	76,653,300	76,653,300	153,306,600	
	1002동 14호	4층~8층	3	355,542,000	423,713,000	-	779,255,000	155,851,000	77,925,500	77,925,500	77,925,500	77,925,500	77,925,500	77,925,500	155,851,000	
	1001동 18호 1002동 29호	4층~9층	5	355,542,000	426,894,000	-	782,436,000	156,487,200	78,243,600	78,243,600	78,243,600	78,243,600	78,243,600	78,243,600	156,487,200	
84P	4	1002동 14, 28호	10층	2	355,542,000	434,050,000	-	789,592,000	157,918,400	78,959,200	78,959,200	78,959,200	78,959,200	78,959,200	78,959,200	157,918,400
		1001동 34호	1층	1	356,334,000	420,564,000	-	776,898,000	155,379,600	77,689,800	77,689,800	77,689,800	77,689,800	77,689,800	77,689,800	155,379,600
		1001동 34호	3층	1	356,334,000	436,817,000	-	793,151,000	158,630,200	79,315,100	79,315,100	79,315,100	79,315,100	79,315,100	79,315,100	158,630,200
		1001동 34호	5층~7층	2	356,334,000	444,943,000	-	801,277,000	160,255,400	80,127,700	80,127,700	80,127,700	80,127,700	80,127,700	80,127,700	160,255,400
84Q	2	1006동 2호	2층	1	356,335,000	427,064,000	-	783,399,000	156,679,800	78,339,900	78,339,900	78,339,900	78,339,900	78,339,900	78,339,900	156,679,800
		1006동 2호	4층	1	356,335,000	443,317,000	-	799,652,000	159,930,400	79,965,200	79,965,200	79,965,200	79,965,200	79,965,200	79,965,200	159,930,400
		1002동 9호	2층	1	357,459,000	387,973,000	-	745,432,000	149,086,400	74,543,200	74,543,200	74,543,200	74,543,200	74,543,200	74,543,200	149,086,400
		1001동 29호	9층	1	357,459,000	400,541,000	-	758,000,000	151,6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151,600,000
84R	7	1001동 25호 1002동 9호	6층~9층	4	357,459,000	403,683,000	-	761,142,000	152,228,400	76,114,200	76,114,200	76,114,200	76,114,200	76,114,200	76,114,200	152,228,400
		1002동 9호	10층	1	357,459,000	413,894,000	-	771,353,000	154,270,600	77,135,300	77,135,300	77,135,300	77,135,300	77,135,300	77,135,300	154,270,600
		1002동 10호	2층	1	355,635,000	399,643,000	-	755,278,000	151,055,600	75,527,800	75,527,800	75,527,800	75,527,800	75,527,800	75,527,800	151,055,600
		1001동 14, 24호	3층	2	355,635,000	407,551,000	-	763,186,000	152,637,200	76,318,600	76,318,600	76,318,600	76,318,600	76,318,600	76,318,600	152,637,200
		1001동 24호 1002동 10호	6층~9층	4	355,635,000	415,460,000	-	771,095,000	154,219,000	77,109,500	77,109,500	77,109,500	77,109,500	77,109,500	77,109,500	154,219,000
		1002동 10호	10층	1	355,635,000	425,741,000	-	781,376,000	156,275,200	78,137,600	78,137,600	78,137,600	78,137,600	78,137,600	78,137,600	156,275,200
84T	5	1002동 22호	2층	1	355,713,000	402,848,000	-	758,561,000	151,712,200	75,856,100	75,856,100	75,856,100	75,856,100	75,856,100	75,856,100	151,712,200
		1002동 22호	4층~8층	3	355,713,000	418,734,000	-	774,447,000	154,889,400	77,444,700	77,444,700	77,444,700	77,444,700	77,444,700	77,444,700	154,889,400
		1002동 22호	10층	1	355,713,000	429,060,000	-	784,773,000	156,954,600	78,477,300	78,477,300	78,477,300	78,477,300	78,477,300	78,477,300	156,954,600
		1002동 4, 6호	1층	2	427,486,000	442,100,000	44,210,000	913,796,000	182,759,200	91,379,600	91,379,600	91,379,600	91,379,600	91,379,600	91,379,600	182,759,200
101A	32	1002동 4, 6호 1003동 1호 1004동 1호 1005동 1호	2층	5	427,486,000	450,585,000	45,059,000	923,130,000	184,626,000	92,313,000	92,313,000	92,313,000	92,313,000	92,313,000	92,313,000	184,626,000
		1002동 4, 6호 1003동 1호 1004동 1호 1005동 1호	3층	5	427,486,000	459,071,000	45,907,000	932,464,000	186,492,800	93,246,400	93,246,400	93,246,400	93,246,400	93,246,400	93,246,400	186,492,800
		1002동 4, 6호 1003동 1호 1004동 1호 1005동 1호	4층 ~ 9층	18	427,486,000	467,556,000	46,756,000	941,798,000	188,359,600	94,179,800	94,179,800	94,179,800	94,179,800	94,179,800	94,179,800	188,359,600
		1002동 4호	10층 ~ 11층	2	427,486,000	478,587,000	47,859,000	953,932,000	190,786,400	95,393,200	95,393,200	95,393,200	95,393,200	95,393,200	95,393,200	190,786,400
		1001동 22호 1002동 8호	12층 ~ 20층	15	427,449,000	483,889,100	48,388,900	959,727,000	191,945,400	95,972,700	95,972,700	95,972,700	95,972,700	95,972,700	95,972,700	191,945,400
		1001동 12호 1002동 8호 1001동 21호 ~ 25호	12층 ~ 20층	9	427,449,000	492,536,000	49,254,000	969,239,000	193,847,800	96,923,900	96,923,900	96,923,900	96,923,900	96,923,900	96,923,900	193,847,800
101C	48	1002동 8호	21층 ~ 27층	7	427,449,000	495,131,000	49,513,000	972,093,000	194,418,600	97,209,300	97,209,300	97,209,300	97,209,300	97,209,300	97,209,300	194,418,600
		1001동 12호	21층 ~ 25층	5	427,449,000	503,777,000	50,377,000	981,604,000	196,320,800	98,160,400	98,160,400	98,160,400	98,160,400	98,160,400	98,160,400	196,320,800
		1001동 11호	12층 ~ 20층	9	427,418,000	478,445,000	47,845,000	953,708,000	190,741,600	95,370,800	95,370,800	95,370,800	95,370,800	95,370,800	95,370,800	190,741,600
		1001동 23호 1002동 7, 21호	12층 ~ 20층	23	427,418,000	487,038,000	48,704,000	963,160,000	192,632,000	96,316,000	96,316,000	96,316,000	96,316,000	96,316,000	96,316,000	192,632,000
		1001동 11호 1002동 7, 21호	21층 ~ 25층	5	427,418,000	489,616,000	48,962,000	965,996,000	193,199,200	96,599,600	96,599,600	96,599,600	96,599,600	96,599,600	96,599,600	193,199,200
		1002동 7, 21호 1001동 13호	21층 ~ 27층	11	427,418,000	498,209,000	49,821,000	975,448,000	195,089,600	97,544,800	97,544,800	97,544,800	97,544,800	97,544,800	97,544,800	195,089,600
101D	36	1001동 24호 1002동 9호	12층 ~ 20층	9	427,362,000	484,430,000	48,443,000	960,235,000	192,047,000	96,023,500	96,023,500	96,023,500	96,023,500	96,023,500	96,023,500	192,047,000
		1001동 24호 1002동 9호	12층 ~ 20층	15	427,362,000	492,996,000	49,300,000	969,658,000	193,931,600	96,965,800	96,965,800	96,965,800	96,965,800	96,965,800	96,965,800	193,931,600
		1001동 13호	21층 ~ 25층	5	427,362,000	495,566,000	49,557,000	972,485,000	194,497,000	97,248,500	97,248,500	97,248,500	97,248,500	97,248,500	97,248,500	194,497,000
		1002동 9호	21층 ~ 27층	7	427,362,000	504,133,000	50,413,000	981,908,000	196,381,600	98,190,800	98,190,800	98,190,800	98,190,800	98,190,800	98,190,800	196,381,600
101E	16	1001동 13호	7층 ~ 9층	3	427,565,000	473,843,600	47,384,400	948,793,000	189,758,600	94,879,300	94,879,300	94,879,300	94,879,300	94,879,300	94,879,300	189,758,600
		1001동 13호	10층	1	427,565,000	484,990,000	48,499,000	961,054,000	192,210,800	96,105,400	96,105,400	96,105,400	96,105,400	96,105,400	96,105,400	192,210,800
		1002동 22호	13층 ~ 20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전수금을 부과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약식 표기	기관추천 특별공급								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특별공급 합계
	국가 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우수선수	장애인										
						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 광역시								
84A	1	1	1	-	-	1	1	-	5	3	2	5	11	1	8	30
84B	1	1	-	-	-	-	-	-	2	1	1	2	5	-	4	13
84C	1	-	-	-	-	-	-	-	1	1	-	1	2	-	1	5
84D	2	1	1	1	1	2	1	1	10	5	5	10	21	3	16	60
84E	-	-	1	-	-	-	-	-	1	1	-	1	3	-	2	7
84F	-	-	-	1	-	-	-	-	1	1	-	1	2	-	1	5
84G	1	-	-	-	-	1	-	-	2	1	1	2	4	-	3	11
84H	-	-	-	-	-	-	-	-	-	-	-	-	-	-	-	-
84I	1	1	-	-	-	1	-	-	3	2	1	3	7	1	5	19
84J	-	-	-	-	-	-	-	-	-	-	-	-	-	-	-	-
84K	-	-	-	-	-	1	1	1	3	2	1	3	6	-	4	16
84L	-	-	-	-	-	1	1	1	3	2	1	3	6	-	4	16
84M	-	-	-	1	-	-	-	-	1	1	-	1	2	-	1	5
84N	-	-	-	1	-	-	-	-	1	1	-	1	3	-	2	7
84O	-	-	-	-	1	-	-	-	1	1	-	1	2	-	1	5
84P	-	-	-	-	-	-	-	-	-	-	-	-	-	-	-	-
84Q	-	-	-	-	-	-	-	-	-	-	-	-	-	-	-	-
84R	-	-	-	-	-	-	-	-	-	-	-	-	1	-	1	2
84S	-	-	-	-	-	-	-	-	-	-	-	-	1	-	1	2
84T	-	-	-	-	-	-	-	-	-	-	-	-	1	-	-	1
101A	-	-	-	-	-	-	-	-	-	-	-	-	-	-	-	-
101B	-	-	-	-	-	-	-	-	-	-	-	-	-	-	-	-
101C	-	-	-	-	-	-	-	-	-	-	-	-	-	-	-	-
101D	-	-	-	-	-	-	-	-	-	-	-	-	-	-	-	-
101E	-	-	-	-	-	-	-	-	-	-	-	-	-	-	-	-
101F	-	-	-	-	-	-	-	-	-	-	-	-	-	-	-	-
합 계	7	4	3	4	2	7	4	3	34	22	12	34	77	5	54	204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모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러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 선정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85㎡ 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85㎡ 초과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85㎡ 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85㎡ 초과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85㎡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최초 가입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구 분	내 용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상호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장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청약 신청자의 기재 사항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 청약 시 소형-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현장 접수 시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호수 추천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호수를 결정합니다.

3.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34세대

- **신청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아래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에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및 도시재생부지 제공자 제외))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유형	추천기관	청약통장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등	서울 지방 보훈청 복지와	청약통장 필요없음
장애인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와,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장기복무제대군인	서울 지방 보훈청 복지와	
우수선수	대한체육회 교육복지부	
중소기업근로자	서울지방중소벤처 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천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34세대

- **신청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에 의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임신부부 또는 임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양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살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사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거주지역요건 기준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자녀가구 배정 기준표에 의한 접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에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기준)이 많은 자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77세대

■ 신청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준소유주택을 처분하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 및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4호(2021.02.02.)]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6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 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비율 적용
- ②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③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 자녀수는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등재된 직계비속은 포함하여 산정하되, 공급신청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성년(만19세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4호(2021.02.02.)] [별표 3])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6.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5세대

- 신청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 「소형·자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 입주자자락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54세대

- 신청자격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항 제1호 및 제28조 제1항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무주택세대주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한다)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가 있는 자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④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 소형·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5호(2021.02.02.)]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자에 대상 세대수의 50%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비율을 적용하고 동일 지역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 해당지역(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신청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기타지역(서울 2년미만, 경기, 인천 거주자) 신청자와 함께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5호(2021.02.02.)] [별표 3])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복 청약 접수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청약 신청시 청약 제약 / 재당첨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임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당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총,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중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접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



2.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 이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10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예치금이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주택에 청약 가능한 거주지역별 [민영 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가 발생한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납입금액이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1. 해당지역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 기타지역 : ① 서울특별시 2년 미만 거주자 ②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전용 85㎡ 초과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가점제 50% / 추첨제 5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예치금이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가 발생한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자로 납입금액이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합니다. (2순위로 청약 가능)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해당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청약 불가	
	2순위	전 주택형 2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에 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해당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 불가	

3.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1호

구 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청·자기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가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배우자도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미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를변경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5.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V 청약 신청 일정, 장소 등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 대상자	신청 일시	신청 방법	신청 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9.27(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당사 주택홍보관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청약홈' 앱 • 당사 주택홍보관(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일반공급	1순위	2021.09.28(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청약홈'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2순위	2021.09.29(수) 08: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물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홍보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이용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일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3. 고려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인간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 사항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간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간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간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출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신청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일기(「전산」인자란)의 인자란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 당첨자 발표 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위 발표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족,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1.10.06(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청약홈'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려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주택공보환(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위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10.06.(수) ~ 2021.10.15.(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금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안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출일시	2021.10.06.(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무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추첨제 우선공급]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료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본 아파트는 대규모주택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거주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수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50%를 서울특별시 2년 미만 및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주택홍보관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주택홍보관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주택홍보관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신청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VI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1.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구비서류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구 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 제출장소	비고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2021.10.11.(월) ~ 2021.10.20.(수) (10:00 ~ 17:00)	•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주택홍보관 -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29길 5-6, F동 4층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사전방문예약제 - 당사 홈페이지(www.elife.co.kr)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	특별공급	추후 당사 홈페이지(www.elife.co.kr) 공지 (예비당첨자 별도 통보)		
	일반공급			

-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2021.10.11.(월) ~ 2021.10.20.(수)]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하며, 상기 서류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 및 계약체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사 홈페이지(www.elife.co.kr)를 통해 **‘사전방문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당사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홍보관 방문 시 당첨자의 주택홍보관 방문 시 당첨자 본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서류제출 장소 :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주택홍보관(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29길 5-6, F동 4층)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 당첨자의 서류제출 기간 및 추첨, 계약일정은 추후 당사 홈페이지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10.(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청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청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청으로 인한 당청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청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청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표1>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 분	서류 유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		①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주택홍보관 방문접수 시 제출) •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②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역일부터 발급 가능(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청약Home(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③ 무주택서약서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
	○		⑤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⑦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⑧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⑨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⑪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		⑫ 단신부임 입증서류 (해외체류 관련 증명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제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⑬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
	○		⑭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⑮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⑯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기관추천	○		①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의 추천서(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같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다자녀가구 배정기준표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 • 인터넷청약[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③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자녀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⑤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 진단서)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자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⑥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접수 장소에 비치
	○		⑦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가 입양인 경우
	○		⑧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 산정 시,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⑨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상세"로 발급
	○		⑩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자녀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 한함)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③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 진단서)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자 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접수 장소에 비치
	○		⑥ 소득증빙 서류 (〈표2〉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임증서류
	○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⑧ 비사업자 확인각서		• 당사 주택홍보관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청약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제출
	○		③ 출임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④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⑥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⑦ 출임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②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④ 소득증빙 서류 (〈표2〉참고)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된 세대원포함) 전원의 소득임증서류 ※ 단,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청약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단,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청약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⑥ 비사업자 확인각서		• 당사 주택홍보관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⑦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3〉참고)	본인	•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된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표2>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 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세무서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주택홍보관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4>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유 형		해 당 서 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①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단독세대일 경우(주민등록표상 청약 당첨자가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사망, 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증명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불가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⑧ 단신부임 입증서류 (해외체류 관련 증명서류)	본인	•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나머지 세대원(공급신청자 및 배우자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및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미성년 자녀) 국내 거주 확인 위해 제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발급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 ※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⑨ 출입국사실증명서	세대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⑩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⑪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가점제 당첨자 • 가점제 당첨 예비입주자	○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부양가족 산정 시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⑤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⑥ 혼인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산정 시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⑦ 출입국사실증명서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② 위임장	본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열심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체결 시 일정 및 구비서류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통·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비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1.10.25.(월) ~ 2021.11.03.(수) (10:00 ~ 16:00)	•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주택홍보관 -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29길 5-6, F동 4층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사전방문예약제 - 당사 홈페이지(www.elife.co.kr)

※ 당첨자 계약 체결 일정 및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약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140-013-160009	주식회사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약자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약과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홍보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위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단,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SNS, 문자 등으로 일정 안내가 가능하며,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분양자는 반드시 본인 확인 하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 1001동 701호 계약자 → '10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 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①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②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③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④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포함)	본인	• 접수 장소에 비치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제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⑤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⑥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 계약 시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계약 체결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도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도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 단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Ⅶ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관련 사항

-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청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 당첨 이후 주소 및 연락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사업주체가 통보한 날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멸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1)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4)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사유가 고의적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주택확보관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3.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①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④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합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벌칙 등

-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전매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절차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절차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소형 · 자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 · 자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자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③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폭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 “소형 · 자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 · 자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3조)
 - ①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②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등” 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③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④ 제2조 제7호의 2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⑤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소속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봄)
 -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열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⑨ “소형 자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7.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를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주택홍보관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대출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사업주체, 시공사와 협의 후 별도 지정됩니다.
-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중 40% 범위 내에서(중도금 1회 ~ 4회)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와 대출취급기관이 별도 협약한 대출 만기일까지이며 대출이자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 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정부 정책, 대출 취급 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 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 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분양가 9억원 초과 세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 대상이 아니므로 중도금 집단 대출은 불가합니다.
- ※ 본 주택 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개인의 주택 소유, 대출 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 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대출 취급 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 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기관의 정책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 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하며,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일시 납부해야 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취급 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Ⅷ 발코니 확장공사(추가선택품목(Ⅰ)) 및 추가선택품목(Ⅱ)

1. 발코니 확장 공사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2021.12.15	입주지정일
84A	4,612,000	461,200	922,400	3,228,400
84B	4,612,000	461,200	922,400	3,228,400
84C	2,999,000	299,900	599,800	2,099,300
84D	3,782,000	378,200	756,400	2,647,400
84E	2,997,000	299,700	599,400	2,097,900
84F	2,997,000	299,700	599,400	2,097,900
84G	3,761,000	376,100	752,200	2,632,700
84H	3,761,000	376,100	752,200	2,632,700
84I	6,082,000	608,200	1,216,400	4,257,400
84J	3,128,000	312,800	625,600	2,189,600
84K	5,136,000	513,600	1,027,200	3,595,200
84L	5,510,000	551,000	1,102,000	3,857,000
84M	6,316,000	631,600	1,263,200	4,421,200

주택형(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계약시	2021.12.15	입주지정일
84N	3,943,000	394,300	788,600	2,760,100
84O	3,364,000	336,400	672,800	2,354,800
84P	2,292,000	229,200	458,400	1,604,400
84Q	2,292,000	229,200	458,400	1,604,400
84R	2,232,000	223,200	446,400	1,562,400
84S	3,234,000	323,400	646,800	2,263,800
84T	4,181,000	418,100	836,200	2,926,700
101A	4,719,000	471,900	943,800	3,303,300
101B	5,039,000	503,900	1,007,800	3,527,300
101C	4,816,000	481,600	963,200	3,371,200
101D	8,131,000	813,100	1,626,200	5,691,700
101E	6,999,000	699,900	1,399,800	4,899,300
101F	6,104,000	610,400	1,220,800	4,272,8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신한은행	140-013-160055	주식회사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

-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Ⅱ)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확장 공사비 중 중도금 납부일정은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시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택홍보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01동 701호 계약자 → '10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가 발코니 확장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일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변경)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 발코니 확장 미선택시 시공 및 공간 부족등의 사유로 추가선택품목(II)선택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사이버 주택전시관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 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확인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일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형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자료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세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본 공사에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비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통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통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또한, 평면 및 시공여건에 따라 선통통 또는 배수구는 사이버 주택전시관 상 표현된 위치와 다르게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확장이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내부 형상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결로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선택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이 마이너스 옵션 선택으로 인해 미설치 되는 품목에 대한 발코니 확장공사비의 비용감소는 없습니다.

2. 추가선택품목(II)

- 추가선택품목(II)
 - 추가선택품목(II)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 및 내용, 납부일정 및 계좌, 제품상세내용 등은 추후 별도로 분양계약자에게 공지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II)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로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선택안		설치위치	업체명	판매금액	비고
84A, 84B, 84C, 84D, 84E, 84F, 84G, 84H, 84I, 84J, 84K, 84L, 84M		선택1	2대	거실+침실1	LG / 삼성	3,750,000	택1
		선택2	4대	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 / 삼성	6,400,000	
84N, 84O, 84P, 84Q, 84S, 84T		선택1	2대	거실(거실1)+침실1	LG / 삼성	3,850,000	
		선택2	4대	거실(거실1)+침실1+침실2+침실3	LG / 삼성	6,500,000	
84R		선택1	2대	거실+침실1	LG / 삼성	3,850,000	
		선택2	3대	거실+침실1+침실2	LG / 삼성	5,500,000	
101A, 101B, 101C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LG / 삼성	5,400,000	
		선택2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LG / 삼성	7,600,000	
101D, 101E		선택1	3대	거실+주방+침실1	LG / 삼성	5,400,000	
		선택2	5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LG / 삼성	7,600,000	
101F		선택3	6대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공간	LG / 삼성	8,700,000	
		선택1	3대	거실(거실1)+주방+침실1	LG / 삼성	5,500,000	
		선택2	5대	거실(거실1)+주방+침실1+침실2+침실3	LG / 삼성	7,700,000	

- ※ 실내기 및 실외기 모델은 주택형별,가전선택,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판매시 별도로 세부 안내 예정입니다.
- ※ 홈네트워크 연결기는 포함/공기청정형에어컨 미판매합니다.

2) 빌트인 가전제품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84A	84B	84C	84D	84E	84F	84G	84H	84I
빌트인 김치냉장고 (세탁공간)	삼성	빌트인김치냉장고[RQ22K5(L/R)01EC] +키큰장	-	-	-	-	-	-	-	-	1,650,000
	LG	DIOS빌트인김치냉장고[K221PR14BL/R] +키큰장	-	-	-	-	-	-	-	-	1,650,000
냉장고장 및 수납장	ALT1	냉장고장 및 수납장(PET마감)	2,600,000	2,600,000	3,980,000	2,600,000	2,500,000	2,500,000	3,920,000	3,920,000	4,350,000
	ALT2 (빌트인 김치냉장고 포함)	삼성 빌트인김치냉장고[RQ22K5(L/R)01EC]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	-	-
		DIOS빌트인김치냉장고[K221PR14BL/R]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	-	-
		LG 빌트인김치냉장고[RQ22K5(L/R)01EC] +키큰서랍장	5,000,000	5,000,000	5,780,000	5,000,000	4,300,000	4,300,000	5,720,000	5,720,000	-
		+냉장고장 및 수납장									
		DIOS빌트인김치냉장고[K221PR14BL/R] +키큰서랍장	5,000,000	5,000,000	5,780,000	5,000,000	4,300,000	4,300,000	5,720,000	5,720,000	-
		+냉장고장 및 수납장									
		삼성 빌트인김치냉장고[RQ22K5(L/R)01EC] +키큰장	-	-	-	-	-	-	-	-	-
	LG	+냉장고장 및 수납장 DIOS빌트인김치냉장고[K221PR14BL/R]	-	-	-	-	-	-	-	-	-



ALT3 (오브제 컬렉션 포함)	LG	+키큰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오브제컬렉션냉장고(빌트인타입)[BC4S1AA1(G)]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	-	7,950,000
		오브제컬렉션냉장고(빌트인타입)[BC4S1AA1(G)] +오브제컬렉션김치냉장고[BC3K1AA1(G)]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	-	-
		오브제컬렉션냉장고(빌트인타입)[BC4S1AA1(G)] +오브제컬렉션김치냉장고[BC3K1AA1(G)] +키큰서랍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9,450,000	9,450,000	10,230,000	9,450,000	8,750,000	8,750,000	10,170,000	10,170,000	-
		오브제컬렉션냉장고(빌트인타입)[BC4S1AA1(G)] +오브제컬렉션김치냉장고[BC3K1AA1(G)] +키큰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	-	-
		오브제컬렉션냉장고(빌트인타입)[BC4S1AA1(G)] +오브제컬렉션김치냉장고[BC3K1AA1(G)] +키큰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	-	-
	삼성	비스포크1도어냉장고[RR39A7695AP] +비스포크1도어변온냉장고[RZ24A5660AP]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	-	7,350,000
		비스포크1도어냉장고[RR39A7695AP] +비스포크1도어변온냉장고[RZ24A5660AP] +비스포크1도어김치냉장고[RQ32A7645AP]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	-	-
		비스포크1도어냉장고[RR39A7695AP] +비스포크1도어변온냉장고[RZ24A5660AP] +비스포크1도어김치냉장고[RQ32A7645AP] +키큰서랍장	-	8,550,000	-	-	-	-	-	-	-
		비스포크1도어냉장고[RR39A7695AP] +비스포크1도어변온냉장고[RZ24A5660AP] +비스포크1도어김치냉장고[RQ32A7645AP] +키큰서랍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8,550,000	-	9,330,000	8,550,000	7,850,000	7,850,000	9,270,000	9,270,000	-
		비스포크1도어냉장고[RR39A7695AP] +비스포크1도어변온냉장고[RZ24A5660AP] +비스포크1도어김치냉장고[RQ32A7645AP] +키큰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	-	-
ALT4 (비스포크 포함)	삼성	비스포크1도어냉장고[RR39A7695AP] +비스포크1도어변온냉장고[RZ24A5660AP] +비스포크1도어김치냉장고[RQ32A7645AP] +키큰서랍장	-	-	-	-	-	-	-	-	-
		비스포크1도어냉장고[RR39A7695AP] +비스포크1도어변온냉장고[RZ24A5660AP] +비스포크1도어김치냉장고[RQ32A7645AP] +키큰서랍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8,550,000	-	9,330,000	8,550,000	7,850,000	7,850,000	9,270,000	9,270,000	-
		비스포크1도어냉장고[RR39A7695AP] +비스포크1도어변온냉장고[RZ24A5660AP] +비스포크1도어김치냉장고[RQ32A7645AP] +키큰서랍장	-	-	-	-	-	-	-	-	-
		비스포크1도어냉장고[RR39A7695AP] +비스포크1도어변온냉장고[RZ24A5660AP] +비스포크1도어김치냉장고[RQ32A7645AP] +키큰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	-	-
		비스포크1도어냉장고[RR39A7695AP] +비스포크1도어변온냉장고[RZ24A5660AP] +비스포크1도어김치냉장고[RQ32A7645AP] +키큰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	-	-
전기오븐	SK매직	스팀오븐레인지[EON-B401SA]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SK매직	IoT스팀오븐레인지[EON-B440SA]	1,040,000	1,040,000	1,040,000	1,040,000	1,040,000	1,040,000	1,040,000	1,040,000	1,040,000
식기세척기	삼성	빌트인식기세척기[DW50T4065SS]	620,000	620,000	620,000	620,000	620,000	620,000	620,000	620,000	620,000
	SK매직	SLIM식기세척기[DWA-2628B]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하이브리드쿡탑/ 인덕션	SK매직	인덕션+가스레인지하이브리드[GRA-BI322H]	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SK매직	보타러스인덕션레인지[IHR-BQ40E]	1,950,000	1,950,000	1,950,000	1,950,000	1,950,000	1,950,000	1,950,000	1,950,000	1,950,000

구분			84J	84K	84L	84M	84N	84O	84P	84Q	84R
빌트인 김치냉장고 (세탁공간)	삼성	빌트인김치냉장고[RQ22K5(L/R)01EC] +키큰장	-	1,650,000	2,600,000	2,600,000	-	-	-	-	-
		DIOS빌트인김치냉장고[K221PR14BL/R] +키큰장	-	1,650,000	2,600,000	2,600,000	-	-	-	-	-
냉장고장 및 수납장	ALT1	냉장고장 및 수납장(PET마감)	3,600,000	4,150,000	4,170,000	4,170,000	2,770,000	2,990,000	4,070,000	4,120,000	2,320,000
		빌트인김치냉장고[RQ22K5(L/R)01EC]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4,020,000	4,240,000	5,320,000	5,370,000	3,570,000
	ALT2 (빌트인 김치냉장고 포함)	DIOS빌트인김치냉장고[K221PR14BL/R]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4,020,000	4,240,000	5,320,000	5,370,000	3,570,000
		빌트인김치냉장고[RQ22K5(L/R)01EC] +키큰서랍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5,500,000	-	-	-	-	-	-	-	-
		DIOS빌트인김치냉장고[K221PR14BL/R] +키큰서랍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5,500,000	-	-	-	-	-	-	-	-
		빌트인김치냉장고[RQ22K5(L/R)01EC] +키큰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	-	-
		DIOS빌트인김치냉장고[K221PR14BL/R] +키큰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	-	-
		오브제컬렉션냉장고(빌트인타입)[BC4S1AA1(G)] +냉장고장 및 수납장	-	7,750,000	7,770,000	7,770,000	-	-	-	-	-
		오브제컬렉션냉장고(빌트인타입)[BC4S1AA1(G)] +오브제컬렉션김치냉장고[BC3K1AA1(G)]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8,470,000	8,690,000	9,770,000	9,820,000	8,020,000
		오브제컬렉션냉장고(빌트인타입)[BC4S1AA1(G)] +오브제컬렉션김치냉장고[BC3K1AA1(G)] +키큰서랍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9,950,000	-	-	-	-	-	-	-	-
		오브제컬렉션냉장고(빌트인타입)[BC4S1AA1(G)] +오브제컬렉션김치냉장고[BC3K1AA1(G)] +키큰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	-	-
	ALT3 (오브제 컬렉션 포함)	오브제컬렉션냉장고(빌트인타입)[BC4S1AA1(G)] +오브제컬렉션김치냉장고[BC3K1AA1(G)] +키큰서랍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	-	-
		오브제컬렉션냉장고(빌트인타입)[BC4S1AA1(G)] +오브제컬렉션김치냉장고[BC3K1AA1(G)] +키큰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	-	-
		오브제컬렉션냉장고(빌트인타입)[BC4S1AA1(G)] +오브제컬렉션김치냉장고[BC3K1AA1(G)] +키큰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	-	-
		오브제컬렉션냉장고(빌트인타입)[BC4S1AA1(G)] +오브제컬렉션김치냉장고[BC3K1AA1(G)] +키큰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	-	-
	ALT4 (비스포크 포함)	비스포크1도어냉장고[RR39A7695AP] +비스포크1도어변온냉장고[RZ24A5660AP] +냉장고장 및 수납장	-	7,150,000	7,170,000	7,170,000	-	-	-	-	-
		비스포크1도어냉장고[RR39A7695AP] +비스포크1도어변온냉장고[RZ24A5660AP] +비스포크1도어김치냉장고[RQ32A7645AP]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7,570,000	7,790,000	8,870,000	8,920,000	7,120,000
		비스포크1도어냉장고[RR39A7695AP] +비스포크1도어변온냉장고[RZ24A5660AP]	-	-	-	-	-	-	-	-	-



			+비스포크1도어김치냉장고[RQ32A7645AP] +키큰서랍장								
		삼성	비스포크1도어냉장고[RR39A7695AP] +비스포크1도어변온냉장고[RZ24A5660AP] +비스포크1도어김치냉장고[RQ32A7645AP] +키큰서랍장	9,050,000	-	-	-	-	-	-	-
		삼성	+냉장고장 및 수납장 비스포크1도어냉장고[RR39A7695AP] +비스포크1도어변온냉장고[RZ24A5660AP] +비스포크1도어김치냉장고[RQ32A7645AP] +키큰장	-	-	-	-	-	-	-	-
			+냉장고장 및 수납장								
전기오븐	SK매직	스팀오븐레인지[EON-B401SA]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SK매직	IOT스팀오븐레인지[EON-B440SA]		1,040,000	1,040,000	1,040,000	1,040,000	1,040,000	1,040,000	1,040,000	1,040,000
식기세척기	삼성	빌트인식기세척기[DW50T4065SS]		620,000	-	-	-	620,000	620,000	620,000	620,000
	SK매직	SLIM식기세척기[DW4-2628B]		500,000	-	-	-	500,000	500,000	500,000	500,000
하이브리드쿡탑/ 인덕션	SK매직	인덕션+가스레인지하이브리드[GRA-BI322H]		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SK매직	보더리스인덕션레인지[IHR-BQ40E]		1,950,000	1,950,000	1,950,000	1,950,000	1,950,000	1,950,000	1,950,000	1,950,000

구분			84S	84T	101A	101B	101C	101D	101E	101F
빌트인 김치냉장고 (세탁공간)	삼성	빌트인김치냉장고[RQ22K5(L/R)01EC] +키큰장	-	-	-	1,650,000	1,920,000	-	-	-
	LG	DIOS빌트인김치냉장고[K221PR14BL/R] +키큰장	-	-	-	1,650,000	1,920,000	-	-	-
냉장고장 및 수납장	ALT1	냉장고장 및 수납장(PET마감)	2,660,000	3,200,000	3,560,000	3,770,000	3,100,000	1,980,000	2,000,000	3,470,000
	ALT2 (빌트인 김치냉장고 포함)	삼성	빌트인김치냉장고[RQ22K5(L/R)01EC] +냉장고장 및 수납장	3,910,000	4,450,000	-	-	3,230,000	3,250,000	-
		LG	DIOS빌트인김치냉장고[K221PR14BL/R] +냉장고장 및 수납장	3,910,000	4,450,000	-	-	3,230,000	3,250,000	-
		삼성	빌트인김치냉장고[RQ22K5(L/R)01EC] +키큰서랍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6,210,000	-	-	-	-
		LG	DIOS빌트인김치냉장고[K221PR14BL/R] +키큰서랍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6,210,000	-	-	-	-
		삼성	빌트인김치냉장고[RQ22K5(L/R)01EC] +키큰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5,020,000
		LG	DIOS빌트인김치냉장고[K221PR14BL/R] +키큰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5,020,000
	ALT3 (오브제 컬렉션 포함)	LG	오브제컬렉션냉장고(빌트인타입)[BC4S1AA1(G)]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7,370,000	6,700,000	-	-
		LG	오브제컬렉션냉장고(빌트인타입)[BC4S1AA1(G)] +오브제컬렉션김치냉장고[BC3K1AA1(G)] +냉장고장 및 수납장	8,360,000	8,900,000	-	-	7,680,000	7,700,000	-
		LG	오브제컬렉션냉장고(빌트인타입)[BC4S1AA1(G)] +오브제컬렉션김치냉장고[BC3K1AA1(G)] +키큰서랍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10,660,000	-	-	-	-
		LG	오브제컬렉션냉장고(빌트인타입)[BC4S1AA1(G)] +오브제컬렉션김치냉장고[BC3K1AA1(G)] +키큰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	-	-	9,470,000
	ALT4 (비스포크 포함)	삼성	비스포크1도어냉장고[RR39A7695AP] +비스포크1도어변온냉장고[RZ24A5660AP]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	6,770,000	6,100,000	-	-
		삼성	비스포크1도어냉장고[RR39A7695AP] +비스포크1도어변온냉장고[RZ24A5660AP] +비스포크1도어김치냉장고[RQ32A7645AP] +냉장고장 및 수납장	7,460,000	8,000,000	-	-	6,780,000	6,800,000	-
		삼성	비스포크1도어냉장고[RR39A7695AP] +비스포크1도어변온냉장고[RZ24A5660AP] +비스포크1도어김치냉장고[RQ32A7645AP] +키큰서랍장	-	-	-	-	-	-	-
		삼성	비스포크1도어냉장고[RR39A7695AP] +비스포크1도어변온냉장고[RZ24A5660AP] +비스포크1도어김치냉장고[RQ32A7645AP] +키큰서랍장 +냉장고장 및 수납장	-	-	9,760,000	-	-	-	-
		삼성	비스포크1도어냉장고[RR39A7695AP] +비스포크1도어변온냉장고[RZ24A5660AP] +비스포크1도어김치냉장고[RQ32A7645AP] +키큰장	-	-	-	-	-	-	8,570,000
		삼성	+냉장고장 및 수납장							
전기오븐	SK매직	스팀오븐레인지[EON-B401SA]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SK매직	IOT스팀오븐레인지[EON-B440SA]		1,040,000	1,040,000	1,040,000	1,040,000	1,040,000	1,040,000	1,040,000
식기세척기	삼성	빌트인식기세척기[DW50T4065SS]		620,000	620,000	620,000	620,000	620,000	620,000	620,000
	SK매직	SLIM식기세척기[DW4-2628B]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하이브리드쿡탑/ 인덕션	SK매직	인덕션+가스레인지하이브리드[GRA-BI322H]		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850,000
	SK매직	보더리스인덕션레인지[IHR-BQ40E]		1,950,000	1,950,000	1,950,000	1,950,000	1,950,000	1,950,000	1,950,000

※ 주택형별로 냉장고장 및 수납장 또는 아일랜드장을 선택하여야 전기오븐 선택이 가능합니다.



3) 가구 및 마감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84A	84B	84C	84D	84E	84F	84G	84H	84I
현관	현관장	현관 오픈 선반장	-	-	1,200,000	-	-	-	800,000	800,000	-
		현관 오픈 선반장+복도 수납장	1,850,000	1,850,000	-	1,850,000	1,850,000	1,850,000	-	-	1,580,000
		현관 오픈 선반장+복도 수납장(소)	-	-	-	-	-	-	-	-	-
	현관중문	3연동슬라이딩(브론즈클리어)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3연동슬라이딩(그레이클리어)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주방	주방	대형팬트리장	-	-	-	-	-	-	2,100,000	2,100,000	-
	아일랜드장		1,180,000	1,180,000	-	1,180,000	1,180,000	1,180,000	-	-	-
침실	침실1	불박이장	-	-	-	-	-	-	-	-	1,900,000
		오픈장	-	-	-	-	-	-	-	-	-
		의류관리기(LG TROMM 스타일러)	-	-	-	-	-	-	-	-	-
		의류관리기(삼성 에어드레서)	-	-	-	-	-	-	-	-	-
		불박이장+의류관리기(LG TROMM 스타일러)	-	-	-	-	-	-	-	-	-
		불박이장+의류관리기(삼성 에어드레서)	-	-	-	-	-	-	-	-	-
		불박이장+오픈장+와이드화장대	7,400,000	7,400,000	-	7,400,000	3,300,000	3,300,000	-	-	-
		불박이장+의류관리기(LG TROMM 스타일러) +오픈장+와이드화장대	8,800,000	8,800,000	-	8,800,000	-	-	-	-	-
		불박이장+의류관리기(삼성 에어드레서) +오픈장+와이드화장대	8,850,000	8,850,000	-	8,850,000	-	-	-	-	-
	침실2	불박이장	1,090,000	1,090,000	-	1,090,000	1,090,000	1,090,000	1,570,000	1,570,000	1,090,000
		시스템선반장	-	-	970,000	-	-	-	-	-	-
	침실3	불박이장	1,030,000	1,030,000	-	1,030,000	1,030,000	1,030,000	-	-	1,030,000
		시스템선반장	-	-	-	-	-	-	-	-	-
욕실	욕실1+욕실2	비데일체형양변기	810,000	810,000	810,000	810,000	810,000	810,000	810,000	810,000	810,000
	욕실1+욕실2	복합환풍기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세탁공간	손빨래하부장		850,000	850,000	-	850,000	-	-	-	-	-
마감재	주방	주방엔지니어드스톤	1,750,000	1,750,000	1,550,000	1,700,000	1,600,000	1,600,000	1,570,000	1,570,000	1,880,000
	바닥	광폭강마루	145mm모던플렉스	350,000	350,000	290,000	320,000	300,000	300,000	330,000	320,000
			145mm골든플렉스	350,000	350,000	290,000	320,000	300,000	300,000	330,000	320,000
	거실	아트월	세라믹판넬(스타투아리오 소프트)	3,250,000	3,250,000	1,080,000	3,250,000	2,980,000	2,980,000	1,610,000	1,610,000
			세라믹판넬(그레이 브라이트)	4,050,000	4,050,000	1,330,000	4,050,000	3,700,000	3,700,000	2,000,000	2,100,000
	거실 복도	시트판넬	770,000	770,000	940,000	770,000	750,000	750,000	850,000	850,000	960,000
	조명	우물천장일체형조명+천장시트판넬(거실)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30,000	230,000	270,000
		침실디밍스위치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구분			84J	84K	84L	84M	84N	84O	84P	84Q	84R
현관	현관장	현관 오픈 선반장	990,000	1,070,000	990,000	1,010,000	950,000	850,000	950,000	950,000	1,500,000
		현관 오픈 선반장+복도 수납장	-	-	-	-	-	-	-	-	-
		현관 오픈 선반장+복도 수납장(소)	-	-	-	-	-	-	-	-	-
	현관중문	3연동슬라이딩(브론즈클리어)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
		3연동슬라이딩(그레이클리어)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
거실	거실2	팬트리	-	-	-	-	-	1,250,000	-	-	-
주방	아일랜드장		-	-	-	-	-	-	-	-	-
침실	침실1	불박이장	2,100,000	-	-	-	-	4,950,000	-	-	-
		오픈장	-	9,950,000	6,100,000	5,900,000	-	-	-	-	-
		의류관리기(LG TROMM 스타일러)	-	-	-	-	1,400,000	-	-	-	1,400,000
		의류관리기(삼성 에어드레서)	-	-	-	-	1,450,000	-	-	-	1,450,000
		불박이장+의류관리기(LG TROMM 스타일러)	-	-	-	-	-	-	-	-	-
		불박이장+의류관리기(삼성 에어드레서)	-	-	-	-	-	-	-	-	-
		불박이장+오픈장+와이드화장대	-	-	-	-	-	-	-	-	-
		불박이장+의류관리기(LG TROMM 스타일러) +오픈장+와이드화장대	-	-	-	-	-	-	-	-	-
		불박이장+의류관리기(삼성 에어드레서) +오픈장+와이드화장대	-	-	-	-	-	-	-	-	-
	침실2	불박이장	1,570,000	-	-	-	-	-	1,750,000	1,750,000	-



		시스템선반장	-	-	-	-	-	1,600,000	-	-	1,500,000
	침실3	불박이장	1,500,000	1,030,000	1,030,000	1,030,000	1,500,000	-	1,750,000	1,750,000	-
		시스템선반장	-	-	-	-	-	-	-	-	-
욕실	욕실1+욕실2	비데일체형양변기	810,000	810,000	810,000	810,000	810,000	810,000	810,000	810,000	810,000
	욕실1+욕실2	복합환풍기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세탁공간	손빨래하부장		-	-	-	-	-	-	-	-	-
마감재	주방	주방엔지니어드스톤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1,300,000	1,270,000	1,000,000	1,030,000	4,100,000
	바닥	광폭강마루	145mm모던플렉스	300,000	320,000	310,000	300,000	310,000	300,000	290,000	260,000
			145mm골든플렉스	300,000	320,000	310,000	300,000	310,000	300,000	290,000	260,000
	거실	아트월	세라믹판넬(스타투아리오 소프트)	1,510,000	1,850,000	1,720,000	1,720,000	1,800,000	1,570,000	-	-
			세라믹판넬(그레이 브라이트)	1,880,000	2,300,000	2,130,000	2,130,000	2,240,000	1,950,000	-	-
	거실 복도	시트판넬	950,000	630,000	620,000	620,000	1,180,000	700,000	850,000	530,000	3,700,000
	조명	우물천장일체형조명+천장시트판넬(거실)	270,000	370,000	360,000	360,000	210,000	280,000	340,000	340,000	-
		침실디밍스위치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140,000

구분			84S	84T	101A	101B	101C	101D	101E	101F
현관	현관장	현관 오픈 선반장	-	750,000	-	1,250,000	1,000,000	1,100,000	1,130,000	950,000
		현관 오픈 선반장+복도 수납장	-	-	1,840,000	-	-	-	-	-
		현관 오픈 선반장+복도 수납장(소)	1,380,000	-	-	-	-	-	-	-
	현관중문	3연동슬라이딩(브론즈클리어)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	1,650,000	1,650,000	-
		3연동슬라이딩(그레이클리어)	1,650,000	1,650,000	1,650,000	1,650,000	-	1,650,000	1,650,000	-
주방	주방	팬트리	-	-	2,450,000	-	-	-	-	-
	아일랜드장		-	-	1,180,000	-	-	1,550,000	1,550,000	-
침실	침실1	불박이장	1,900,000	2,350,000	4,000,000	-	2,200,000	-	1,950,000	1,950,000
		오픈장	-	-	-	-	-	-	-	-
		의류관리기(LG TROMM 스타일러)	-	-	-	-	-	-	-	-
		의류관리기(삼성 에어드레서)	-	-	-	-	-	-	-	-
		불박이장+의류관리기(LG TROMM 스타일러)	-	3,750,000	5,400,000	-	-	-	3,350,000	-
		불박이장+의류관리기(삼성 에어드레서)	-	3,800,000	5,450,000	-	-	-	3,400,000	-
		불박이장+오픈장+와이드화장대	-	-	-	3,700,000	-	4,300,000	-	-
		불박이장+의류관리기(LG TROMM 스타일러) +오픈장+와이드화장대	-	-	-	5,100,000	-	5,700,000	-	-
		불박이장+의류관리기(삼성 에어드레서) +오픈장+와이드화장대	-	-	-	5,150,000	-	5,750,000	-	-
	침실2	불박이장	1,300,000	1,450,000	1,520,000	-	2,170,000	1,860,000	1,860,000	2,300,000
		시스템선반장	-	-	-	1,300,000	-	-	-	-
	침실3	불박이장	1,300,000	1,450,000	1,300,000	2,280,000	-	2,250,000	2,250,000	1,320,000
		시스템선반장	-	-	-	-	1,180,000	-	-	-
욕실	욕실1+욕실2	비데일체형양변기	810,000	810,000	810,000	810,000	810,000	810,000	810,000	810,000
	욕실1+욕실2	복합환풍기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650,000
세탁공간	손빨래하부장		-	-	830,000	-	-	-	-	-
마감재	주방	주방엔지니어드스톤	1,150,000	1,250,000	1,600,000	1,700,000	1,730,000	1,970,000	1,710,000	1,650,000
	바닥	광폭강마루	145mm모던플렉스	290,000	320,000	410,000	320,000	370,000	390,000	370,000
			145mm골든플렉스	290,000	320,000	410,000	320,000	370,000	390,000	370,000
	거실	아트월	세라믹판넬(스타투아리오 소프트)	3,800,000	1,150,000	1,740,000	1,800,000	3,200,000	1,590,000	1,590,000
			세라믹판넬(그레이 브라이트)	4,600,000	1,430,000	2,170,000	2,230,000	4,000,000	1,980,000	1,980,000
	거실 복도	시트판넬	2,500,000	1,350,000	600,000	1,050,000	1,280,000	1,150,000	1,180,000	3,150,000
	조명	우물천장일체형조명+천장시트판넬(거실)	-	300,000	270,000	360,000	490,000	320,000	320,000	-
		침실디밍스위치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10,000	280,000	280,000	210,000

※ 침실1 불박이가구의 경우 '불박이장' 또는 '불박이장+의류관리기(LG TROMM 스타일러)' 또는 '불박이장+의류관리기(삼성 에어드레서)' 중 선택 가능합니다.(택1)

※ 거실 아트월의 경우 '세라믹판넬(스타투아리오 소프트)' 또는 '세라믹판넬(그레이 브라이트)' 중 선택 가능합니다.(택1)

※ 식기세척기 선택시 84I, 84P, 84Q, 84R 타입의 경우 냉장고장 및 수납장을 선택하여야만 식기세척기 선택이 가능합니다.

※ 84K,84L,84M 타입의 경우 식기세척기 미판매합니다.



- ※ 전기오븐 선택시 84C,84G,84H,84I,84K,84L,84M / 101B,101C의 경우 냉장고장 및 수납장을 선택하여야만 전기오븐이 설치 가능하며 84A,84B,84D,84E,84F / 101A,101D,101E의 경우 아일랜드장을 선택하여야만 전기오븐 선택이 가능합니다.
- ※ 엔지니어드스톤 선택시 냉장고장 및 수납장, 아일랜드장을 선택하여야만 선택이 가능합니다.(주책형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84R타입의 경우 엔지니어드스톤은 주방가구 상판+아일랜드장상판(연장)+주방벽+거실벽1개면(시트판넬 대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실벽1개면은 시트판넬을 대체하여 엔지니어드스톤으로 적용 판매하는 것으로 분리 판매는 불가능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II) 계약은 주책형별로 품목의 적용 및 구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주책형별 구성내용, 적용범위 등 상세내용은 분양계약과 별도로 진행되며, 계약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관련 사항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II)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II) 계약금, 중도금, 잔금	국민은행	358837-04-024538	주식회사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

- ※ 추가선택품목(II)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10%), 중도금(20%), 잔금(70%)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행사가 적의 조정한 추가선택품목에 준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II)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주책홍보관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금액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01동 701호 계약자 → '100107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추가선택품목(II)이외 '추가선택품목' 관련 유의사항

-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행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상세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합니다.
-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설치비용은 아파트 공급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현장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아파트계약자 부담입니다)
- ※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시공 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계약 가능기간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안내 예정입니다.
- ※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기재하고 체결하오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 선택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 시점에 이르러 해당제품의 생산 단종(성능 개선, 디자인 변경, 기술적사항 변경 등의 사유), 혹은 품질, 품귀 등의 사유 발생시 동제조사의 동종, 동급 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
-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서비스내용 및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서비스내용에 대한 민원,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구성 및 설치위치는 주책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실과 침실의 일반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과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판매가격은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 다류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구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실내기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실외기 공간에 설치되며,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능합니다.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됨.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 빌트인 가전(ALT2빌트인김치냉장고, ALT3오브제컬렉션, ALT4비스포크)의 판매가격에는 냉장고장 및 수납장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세탁공간에 설치되는 빌트인김치냉장고는 제외)
- ※ 복합 환풍기 선택 시 욕실 배기팬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복합 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 ※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정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복합 환풍기의 리모콘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 비데일체형 양변기 선택 시 안방욕실에 기본 적용되는 분리형 비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하이브리드쿠팡 및 인덕션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에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쿠팡은 시공 및 제공 되지 않으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을 감액하여 반영합니다.
- ※ 불박이가구(주방포함) 선택 시 설치 부위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 비스포크, 오브제컬렉션 모델은 B2B전용모델이며 주방공간에 맞춤 디자인한 상품으로 주책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상품구성, 디자인, 색상에 대한 변경 및 분리판매는 불가능합니다.
- ※ 현관중문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현관입구는 기본설계대로 시공됩니다.
- ※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라 인접하는 가구, 마감재, 벽체, 물딩, 걸레받이, 커텐박스, 등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위치, 수량, 형태가 사이버주택전시관 및 홍보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따라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의 형태, 사이즈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사이버 주택전시관의 이미지와 실물의 크기, 재질감, 색감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안내되었으며,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홍보된 이미지와 실제 상품의 크기, 재질감, 색감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서 상품구성 및 디자인(색상포함), 제품모델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 거실 조명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84K, 84L, 84M, 84O, 84P, 84Q, 84T, 101B, 101C 타입은 별도의 식탁 등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 현관 오픈선반장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기본형의 선반장내 우산꽂이는 제공되지 않으며, 선반 청소기와 선반 실균기가 제공됩니다.

4. 마이너스 옵션 품목

■ 공통

-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 천장, 일반가구, 주방, 욕실, 창호,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구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① 바닥재	〈강마루(걸레받이 포함)〉 거실, 주방, 식당, 복도, 〈타일〉 현관, 〈엔지니어드스톤〉 현관디딤판, 〈강마루〉 침실, 〈타일〉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 바닥	각실 바닥 미장 마감, 각실 바닥 난방(거실, 주방, 복도, 침실)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 슬라브
② 벽	벽지, 벽 도장 (발코니, 대피공간, 실외기실), 주방벽타일 인테리어 마감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③ 천장	콘센트, 스위치, 조명	콘센트, 스위치의 배관배선
④ 일반가구	선반장	천장(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⑤ 주방	주방가구 : 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후드, 콘센트, 스위치	-
⑥ 욕실	타일(바닥, 벽), 천장재, 석재(인조대리석선반 등), 재료분리대, 욕조 하부 코킹, 욕실 환풍기, 콘센트, 스위치, 욕실장, 샤워부스,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 배기덕트, 소방관련시설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금수, 금당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라브, 전기 배관 배선
⑦ 창호	창호(각 침실 및 욕실 문틀, 목문짝, 목문 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 가틀, 문틀사중, 플라스틱 창호내창, 현관 방화문, 주방발코니 도어 대피공간도어, 실외기 도어
⑧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
⑨ 기타	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	월패드, 도어폰, 각실 온도조절기(84N, 84O, 101F 거실-2는 제외)

- ※ 상기 품목은 주책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타입)		84A	84B	84C	84D	84E	84F	84G	84H	84I	84J
금액	5층 이하	28,266,000	28,266,000	-	-	-	-	-	-	-	-
	6~10층 이하	30,248,000	30,248,000	-	30,248,000	30,379,000	-	29,989,000	29,954,000	29,787,000	30,515,000
	11~15층 이하	28,382,000	-	-	28,382,000	28,506,000	28,506,000	28,139,000	-	-	-
	16~25층 이하	-	-	28,904,000	-	-	-	-	-	-	-
주택형(타입)		84K	84L	84M	84N	84O	84P	84Q	84R	84S	84T
금액	5층 이하	-	-	-	-	-	-	29,152,000	-	-	-
	6~10층 이하	-	-	-	-	30,525,000	31,196,000	-	30,153,000	-	-
	11~15층 이하	-	-	-	28,674,000	28,642,000	-	-	-	-	-
	16~25층 이하	28,982,000	28,567,000	28,783,000	-	-	-	-	28,609,000	28,805,000	28,930,000
	26~27층 이하	29,453,000	29,031,000	-	-	-	-	-	29,074,000	29,273,000	-
주택형(타입)		101A	101B	101C	101D	101E	101F				
금액	5층 이하	34,352,000	-	-	-	-	-				
	6~10층 이하	36,778,000	-	-	-	-	-				
	11~15층 이하	34,509,000	-	-	-	-	-				
	16~25층 이하	-	35,548,000	35,325,000	35,218,000	35,248,000	35,626,000				
	26~27층 이하	-	36,131,000	35,905,000	35,796,000	-	-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 중 85㎡ 초과하는 주택형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 마이너스 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을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필요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절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구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 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주방기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기 시공된 자동식 소화기가 설치가능한 제품 또는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됩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 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IX 기타 계약자 안내

1.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당사는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 방문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2. 공동주택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3. 입주예정일 및 부대복리시설 안내

■ 입주예정일 : 2024년 0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선행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해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주민회의실, MDF실/방재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라운지카페), 피트니스, 스카이라운지(공유주방), 커먼스팟#1~7, 리빙랩(개인스튜디오), 플레이가든(실내놀이터), 키즈스테이션, 게스트하우스, 공방, 경비실, 창고/택배보관함, 쓰레기보관대(옥외), 재활용 폐기물 보관시설(지하2층), 어린이놀이터(옥외), 주민운동시설(옥외), 근린생활시설 등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와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물이 예정공정물(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물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물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 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7.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통신감리	
상 호	(주)명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동우이앤씨(주)	현대공영(주)	
금 액	2,441,708,500	462,700,000	319,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8. 사업주체 현황

■ 사업주체 현황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 호	주식회사 고덕강일10피에프브이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주 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명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34(명동)
법인등록번호	110111-7395448	110111-7736808	110111-7736808



9.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제57조 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위 : 원)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택지비		택지매입원가	223,549,262,000	건축	공사비	철근콘크리트공사	44,313,476,116	기계 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2,326,357,580
		기간이자	20,394,700,565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300,000,000
		필요적 경비	11,800,738,302			조적공사	1,700,030,399		가스설비공사	400,000,000
		그밖의 비용	9,989,015,249			미장공사	737,158,543		자동제어설비공사	614,636,183
		계	265,733,716,116			단열공사	1,804,418,323		특수설비공사	278,368,042
공사비	토목	토공사	2,192,455,661			방수, 방습공사	2,197,115,249		그 밖의 공중	공조설비공사
		흙막이공사	8,267,214,735			목공사	1,173,120,480	전기설비공사		9,818,000,000
		비탈면보호공사	-			가구공사	1,819,331,040	정보통신공사		4,382,000,000
		옹벽공사	-			금속공사	994,169,700	소방설비공사		5,896,000,000
		석축공사	-			지붕 및 흙통공사	864,927,734	승강기공사	960,054,871	
		우수, 오수공사	1,431,807,670		창호공사	3,598,894,957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4,970,849,231	
		공동구공사	-		유리공사	462,595,687		이	윤	3,682,478,938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타일공사	1,600,613,502		계	136,142,903,620	
		도로표장공사	1,208,087,914		돌공사	300,000,000	간접비	부대비	설계비	2,200,000,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		도장공사	954,402,941			감리비	2,930,371,360
	정화조시설공사	-	도배공사		735,685,768	일반분양시설 경비			12,059,622,469	
	조경공사	2,393,803,442	수장공사		4,097,422,001				분담금 및 부담금	3,159,843,375
	부대시설공사	760,647,992	주방용구공사		2,177,231,870				보상비	-
	공동가설공사	3,569,069,888	그 밖의 건축공사		904,694,858				그 밖의 사업비용 경비	6,785,792,735
	건축	가시설물공사	1,043,878,514		기계 설비	급수설비공사		884,811,113	계	27,135,629,939
지정 및 기초공사		6,034,611,124	급탕설비공사	884,811,113		그 밖의 비용		67,678,878,325		
철골공사		-	오수,배수설비공사	2,107,640,042		합계		496,691,128,000		

- 흙막이 공사비용은 택지비 중 “그 밖의 비용”에 포함됨.

10.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 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택지비 가산비	50,451,668,851	택지비에 대한 가산이자,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말뚝박기 공사비, 지역난방부담금
건축비 가산비	67,678,878,325	구조형식 가산비(지상 및 지하층) 법정초과 복리시설, 인텔리전트설비 공사비(홀네트워크, 에어컨냉매배관,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공동주택생산등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지하주차장 층고증가, 법령 및 조례 등 제개정에 따른 가산비(건강친화형주택, 아날로그감지기, 범죄예방시설, 전기차충전시설), 외관특화공사비, 분양보증수수료

X 기타 유의사항

-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주택홍보관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황(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은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 유형별, 일반공급 순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층별 등 공급금액의 상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대지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 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등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엔지니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실수변경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 전화상담 및 주택홍보관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사이버 주택전시관,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하며, 일조권 취약 세대는 일조권 취약세대 확인서를 작성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당청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주택홍보관으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청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 인허가 및 실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동충입구, 창틀모양 및 색채, 난간의 디테일, 축벽문양, 입면, 환기용캡 등)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단지 배치 상 사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설 발전기실 등의 급-배기구), 및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해충, 연기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세대내 창호의 형태 및 위치는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국토교통부의 '임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 본 주택은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 태풍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자보상금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라 면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도로,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지연될 수 있으며,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하여야 함)
 -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정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일부 타입에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 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 (2006.1.23. 건설교통부)"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입 하였습니다.
 - ※ 본 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 일부 세대는 수분양자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Mock 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준공 전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 인도하기로 합니다.
 - ※ 구조개선 및 마감품질 향상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안 하기를 진행함)
 -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인 초등학생, 중학생은 인근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배치할 계획으로 학생배치 여건 등에 따라 배치 대상과 등 배치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 사업 추진 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배치계획 등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학교배치(배정) 시기가 지연 될 시 입주예정시기가 연기 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 동파의 우려가 있는 저층, 고층 일부 세대용 수도 계량기의 동파 방지를 열선 전원은 공용 전기 요금 부과됩니다.
 -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본 주택은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방이 적용됨에 따라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각종 출입구 계사문 입주인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 관리사무소, 경량로, 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 단지 내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단지 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 지적정리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상가는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함으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 청약 신청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주변 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을 해야 하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 개발, 일조권, 조망권, 혐오시설,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북측에는 서울강동소방서강일119안전센터(서울시 강동구 고덕로98길 22)가 위치하여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익 및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서측 초등학교 신설 계획(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산77-56 일원), 복합커뮤니티시설 계획(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산77-27 일원) 및 단지 남측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2블럭(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43 일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4블럭(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28 일원) 등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인해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와 시공사와 무관하며, 현장여건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익 및 민원 등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초등학교(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산77-56 일원)와 중학교(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554-9 일원)의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기관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원소)요청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설학교의 개교시기, 설립계획, 학급 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으며, 당 사와는 무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여건**
- ※ 계약 전 주택홍보관을 방문하시어(사업승인 설계도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지 주출입구 외의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단지 동서방향 동선) 및 단지 북측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9블럭과 단지 남측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11블럭의 디자인(선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동측면은 경관녹지구간으로 별도의 이동통선이 계획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현장 방문은 가능하나,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안-하기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도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
 - ※ 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들에 일체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지하1,2층 및 지상1~2층, 11,12층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과 해당시설에 필요한 실외기로 인해 인접한 세대의 미관 저해, 소음/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실외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분리수거장, 주민공동시설 등) 및 수경공간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내 1001동 3,5,7,9,11층과 1002동 4층, 8층, 12층에 부분 또는 전구간이 휴게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어, 그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내 지하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연결이 안 되어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분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 단지 내 비상차량통전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조정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조정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 뿌리분에 감거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실 시공 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등에 의해서 도면상의 차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욕실/현관/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 합니다.
- ※ 지상 1, 2층(필로티 포함)과 최상층 세대와 옥상에 면한세대는 세대 내 방법을 위하여 창측에 방범용 동체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외장용 구조물, 공경 및 위상안테나(1001동),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1001동), 피뢰침, 태양광판넬, 이동통신 설비등의 시설물, 경광조명설비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태양광 설비는 본 공사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노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 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발전에 의한 전기는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위치는 1001동, 1002동, 1003동, 1004동, 1005동, 1006동 전동 주동 지붕에 설치되며 시공시 변경될수 있습니다.
- ※ 이동통신중계장치는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에 의해 위치가 선정되었으며, 위치는 추가 협의에 따라 이동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에 대해서는 어떠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이동통신중계 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1001, 1002, 1003동 주동 옥상 및 지하층 제연 헬름 및 1001동 동전기실, 1002동 동전기실에 설치됩니다. 향후 위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는 동과 층이 있으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다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최상층 엘리베이터홀)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카 이동에 대한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세대 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규모,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필로티 구조에 따라 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 수량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지하층(통지하,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 벽체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민공동시설의 창호크기, 위치, 재질, 외부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쓰레기분리수거대는 1001동 1호라인 남측 1개소, 1001동 28호라인 북측 1개소, 1002동 4호라인 북측 1개소, 1002동 18,19호라인 북측 1개소, 1004동 1호라인 서측(1003동 1호라인 북측) 1개소, 1001동 7호라인 북측(근생용) 1개소, 총 6개소가 배치되며, 일부 세대 내부에서 쓰레기분리수거대가 보일 수 있으며, 1001동 28호라인 북측 쓰레기분리수거함은 1층에 배치되어, 28호라인 1층 세대 주방창에서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쓰레기 상·하차 시 차량 및 신소호의 육성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외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구간 및 깊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조정, 지하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조정, 수경시설 및 조정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정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조정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레벨차에 의해 각 동별 출입구 레벨이 상이함을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주동의 주출입구가 부대시설의 출입구와 인접해 있어 통행 및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001동 지하층, 1층 주동출입구 및 1002동~1006동 1층 주동출입구가 부대/복리시설 및 상가의 출입구와 인접해 있어 통행 및 이용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준공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주차장비 시행규칙에 따라 지상에 직접 진입하는 주차장 주출입구 진입 높이를 2.7M이상으로 적용 하였고, 각 동행로 및 램프의 높이를 택배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2.7M를 적용하였습니다. 단, 부출입구 램프 진입 높이와 부출입구 램프 하부 주차도로는 높이를 2.3M 적용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유효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차책임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 무인택배보관소는 지하2층에 4개소가 설치됩니다.
-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또는 계단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 가스정압기실이 단지내부에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외부 도로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전주 및 전선로 등이 지중화 될 경우 단지 내부에 한전공급설비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 전력공급을 위해 필수 기반시설인 한전 공급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제공 계약의 승계여부가 입주민에게 있으며, 설치 위치, 장소, 면적, 수량 등은 한국전력공사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가 주출입구 레벨은 현상상황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 될 수 있으며, 계단 및 램프의 위치, 형태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환기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 상 일부세대는 이웃집 사다리차량이 진입할 수 없으며 고층세대의 경우 이웃집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하여야 하며 지상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일부세대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일부 지상부 주차장 계획 및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달로그나 모형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 일부 지상부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근린생활시설과 주차장을 같이 사용함을 분양 홍보물나 모형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 1001~1006동 각 동 1층과 일부 2층,11층,12층에 부대복리시설, 1003동 남측에 수경시설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근린생활시설(상가)이 1001동 1,2호라인, 1001동 3호라인, 1001동 5호라인, 1001동 7호라인 지하1층에 1002동 28호라인 1층, 1003동 1호라인 1층, 1004동 1호라인 1층에 위치하므로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가 1001동 9,10호 동측, 19,20,21호 남측과 26,27호라인 서측사이에 1개소, 1002동 12,13호 서측, 16,17,18,19호라인 남측, 21호라인 북측 사이에 1개소, 유아놀이터가 1001동 80,31,32호라인 동측, 33,34호라인 남측, 22호라인 북측사이에 1개소가 위치하므로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다른 동에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북서측 1006동 1호라인 주변 공유자전거 거처대가 설치되어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수 있음으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동 외벽 마감은 치장벽돌(층수 및 위치 상이함)과 수성페인트 도료로 시공됩니다.
-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 동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는 일부 동에 근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다른 동에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 1001동 10,18호 라인 지하1층에 위치한 창고는 입주민들을 위한 CS센터 및 자재창고로 운영될 수 있으며(사용기간 변동 가능) 이로 인해, 1001동 18,19호라인 지하1층 출입구와 9,10호라인 지하1층 출입구, 7,8호라인 지하1층 출입구에 면해 민원관련 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배치도상의 필로티는 동별 라인마다 위치와 높이가 상이하며, 1~3개층 필로티입니다.
- ※ 중간층(1001동 11층, 1002동 12층)의 필로티의 일부는 휴게공간(조경계획)으로 조성됩니다.
- ※ 1001동 지하1층에는 유치원 및 학원차량 등의 승하차를 할 수 있는 대기공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 1001동 지하1층에 승하차 대기공간 및 상가주차공간과 아파트 주차차단기가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특정시간대(출퇴근, 등하원시간 등)의 차량진출입시 교통혼잡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강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하수도 사용자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도난이나 기밀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부출입구,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경비실도 주,부출입구에 배치됨을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내 우수재활용을 위하여 빗물저류조(처리시설)가 1001동 7호라인 1개소, 1001동 22,23호라인 1개소, 1002동 6호라인 1개소, 1006동 1호라인 1개소가 지하층에 설치되어 소음, 진동에 의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산배치되어 실외기실이 주동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차장 하부 일부구간에 지열시스템을 위한 지중 천공배관이 설치되며, 지열시스템은 주민공동시설 냉난방 열원으로 사용됩니다.
- ※ 고덕강일지구 내, 외 인접지역에 자원순환센터(폐기물처리시설), 열병합 발전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지하철 5호선 철도시설(하남선 신철공사 포함), 하남비행장 등이 위치, 계획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입지여건(향후 변경사항 포함)을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동 시설물로 인한 소음, 진동, 악취, 대기질 등 환경영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실 등은 제외)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 인접 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가 들쭉날쭉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 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 부위에는 직접 외기에 면해 결로에 취약하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사시 설치기준은 사이버 주택전사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구조형식에 의해 세대 내에 보가 설치되어 노출되는 세대(84A(84F와 인접시),84F,84I,84K,84L,84M,84N,84O,84P,84Q,84R,84S,84T,101A,101B,101C,101F)가 있으니, 사이버 주택전사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가구(일반, 주방) 배면에는 시공 선후 관계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 목창류, 가구류 바닥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사이버 주택전사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 골조와 이질 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상의 이유로 사이버 주택전사관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설계관련 주요 고지사항

-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사항

-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위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와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단지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편의 시설물, 안내시설물, 동출입구, 외부 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정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관청과의 심의, 협의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홍보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모집공고 시에 제시된 CG[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 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 주체에게 위락합니다.
-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단지 내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실별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 근린생활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사이버 주택전사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 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 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방식 차이로 연면적과 전제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의 동 배치 특성에 따라 대부분 동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의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삿짐 운반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시공됩니다.
-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사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CS센터 및 자재창고를 1001동 지하1층 주차장 창고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 지하층에 있는 창고는 입주민들을 위한 CS자재창고로 운영될 수 있으며(사용기간 변동 가능) 민원관련 출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 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과 주거 공용면적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조정(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단지에 식재되는 나무의 종류 및 배치는 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놀이시설물을 포함한 단지 내 시설물의 디자인과 배치는 모형 및 분양홍보물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사이버 주택전사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홍보관 내 단지 및 세대 도면이 비치되어 있으나 계약예정자는 주택홍보관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의 소방 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공사 진행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 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 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홍보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 1003동 지하층에 저수조, 소화수조, 펌프실(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약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보도 부분에 대한 관리는 입주민이 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배치

-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대관 안·하거에 따라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 차량 통선 등), 부대 복리시설(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 복리시설, 조정공간 등은 실 시공 시 대관 안·하거과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기타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의 도로(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소음, 전주 보안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정(수목, 조정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환기구 및 비상용 발전기(공공보행도로 내) 등 시설 급배기구가 설치되어 소음 및 냄새, 진동, 연기,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지는 지형의 특성상 단차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음식을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며, 차량을 통한 수거 예정입니다.
- ※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한전페드는 1001동 5호 서측, 1003동 1호 북측에 각각 1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나,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옥외안테나 설치 위치 : 옥상층(1001동·1002동·1003동) / 중계장치 설치 위치 : 옥상층(1001동·10002동·1003동), 지하 1~2층(1001동·1002동 동전기실)

■ 아파트 주동

- ※ 실외 어린이놀이터, D/A(설비 환기구), 쓰레기보리수거장,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진동·냄새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옥탑 및 지붕에 의장용 구조물, 방충안테나, 피뢰침, 태양광판넬, 이동통신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거환경설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 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사양은 다르며,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외부 색채, 입면(창호 형태 등) 및 옥상구조물 등은 인허가 및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차이에 대한 정산은 하지 않으며, 선충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공용부 마감이 다소 매끄러운 타일 또는 바닥 화강석 물갈기 제품이 적용될 경우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 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 시공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1001~1006동의 지하1~2층, 지상1~2층에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피트니스, 커먼스팟#1~15, 리빙랩(개인스튜디오), 플레이가든(실내놀이터), 키즈스테이션, 경로당, 공방,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하고, 1001동 13,14호라인 11층에 게스트하우스, 1002동 9호, 10호라인 12층에 스카이라운지(공유주방)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세대(수직,수평)에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엘리베이터 홀의 마감 사양은 지하층, 1층, 2층 이상의 기준층 엘리베이터 홀 마감사양이 서로 상이합니다.
- ※ 각 동과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 측면에는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조망권 침해 등으로 사생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 층에 피뢰설비가 설치되며, 일부 동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축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 ※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가 1001동 상부에 설치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실외 노출 복도에는 소방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일부세대의 오펜수 배관은 실외 노출 복도 천장속 공간에 설치되며 유지관리를 위한 천정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84E, 84J형의 주방창과 세탁공간창은 공용복도에 면하여 설치되므로 보행동선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1001과 1002동의 공용복도 및 공용계단창, 휴게공간에 설치되는 일부 수직루버는 시야를 가릴 수 있습니다.
- ※ 1001동 7,8,9,10층에 위치한 101E형(713,813,913,1013호)의 실외기실 전면에 위치한 옥외발코니에는 수직루버가 설치되어 시야를 가릴 수 있으므로 필히 입면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1001동 2,4,6,8,10층과 1002동 1,3,5,7,9층에는 외벽측에 수평물당이 돌출설치되어 해당층은 일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고드름, 눈쌓임 및 먼지 등의 오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1002동 84N형의 복도 1층 상부에 공용복도가 위치하여 보행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복도 및 휴게공간은 외기에 면해있어 우천시 비 들이침과 겨울에 눈이 쌓일 수 있으며,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써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 1002동 84G형은 계단실 채광 및 환기창과 인접하여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001동 33,34호라인(84A,84P형) 및 29,30호라인(84D,84E,84R형)의 출입구 일부 복도는 관리사무소 및 플레이가든을 이용하는 방문객 및 관리자 동선과 중복되어 사생활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용상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1001동 1층에 위치한 34호(84P형) 세대는 측벽에 위치한 외부계단의 보행 동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1001동 1,3,5,7호 라인(84B형), 1003~1006동 서측에 위치한 측벽 일부세대[각 동 1호라인(101A, 84B형)]은 입면디자인 구현을 위해 채광 및 환기가 불가능한 이미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단위세대

-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는 기본으로 설치되는 마감재 이외 별도의 전사품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해당 전사품이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전기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 월 패드, 콘센트 및 스위치, 소방시설, 디퓨저, 바닥배수구 및 배선기구류 등의 위치와 사양 및 수량은 변경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실 시공 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 배관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천실 내부로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 무관 합니다.
-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발코니 확장 시 사시창은 이중 창호[PL 창]가 설치되며, 창호 사양(유리종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열림 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열 성능(TDR값 제외)은 동등 이상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단, 비확장시 발코니 내부사시는 이중창이 설치되며, 외부골조에는 사시가 설치되지 않으며, 실외기실은 그릴 창으로 설치됩니다.
- ※ 사시창이 설치되지 않는 비확장 세대는 주방과 면한 발코니에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고, 방과 거실과 면한 발코니는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비확장형(기본형) 단위세대는 발코니 외창은 미설치 되고, 거실 창은 일반 PL 창으로 시공되며, 외부골조에는 철제 난간 대가 설치되어 외부 입면이 확장형 단위세대와 상이합니다.
-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는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비확장을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등기구 및 배선기구의 사양은 확장형에 비해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비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 홀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수로 인해 소음 및 천장구간 배관으로 인해 마감면이 달라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세대는 비확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선 홀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 발코니 확장 시 천실1에 면한 발코니에만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그 외 발코니에는 수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일부 세대에서는 발코니 배수 입상관이 시야확보 및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세대별 입상관 위치도 상이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 타인별로 발코니 및 실외기실 배수방식이 상이하게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 및 보실차로 인해 우물천장 값이, 등박스의 크기, 커튼박스의 크기, 커튼박스의 크기, 시스템에어컨(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 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
- ※ 경량벽체는 시장 수급 상황 등에 따라 조적 벽체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사시 설치기준은 주택충보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단위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에어컨 사용 시 원활한 에어컨 동작을 위해 실외기실에 있는 그릴 창 및 방충망을 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외기와 실내 간 온도 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창시관 음식물 조리, 실내발열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부 전기, 설비 공사상 일부 노출 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마감 자체 내용은 평형별, Type 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주택홍보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설계 및 시공상의 이유로 세대의 모든 난간대 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추후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단위세대 커튼박스 위치와 높이, 사이즈는 타입별, 층별로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1001, 1002동 101B(침실1,2,3)와 101C(거실1면)에 구조사항으로 테두리보가 설치됨에 따라 커튼박스가 축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1002동 84K, 84L(7,8호라인) 2층 하부에 피트니스가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 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홍보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렌지후드, 위생도기, 수전, 액세서리, 조명기구, 배선기구류)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공사 시 실외기 그릴의 손잡이 모양 및 개폐작동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주방 상부 장 뒷면 또는 측면으로 가스 배관이 설치되므로 가스 배관이 지나가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에어컨 등) 및 가구의 용량/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발코니 일부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 배관(천장·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 설치 위치는 실외기실에 계획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세대 환기 장비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 장비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코니 천장높이 및 문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사업승인 도면의 각 세대 주방 창호 크기는 창호 프레임 끝단 간 거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창호 프레임 일부가 마감재로 덮혀지 시공되므로 세대 내부에서 창호 크기가 실제 크기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 ※ 3층 이상의 세대에는 건축법상 하향식 피난구 또는 대피공간이 설치됩니다. 단, 84C, 84E, 84J, 84T 타입 세대와 1001동 11층과 1002동 12층의 84K,84L,84M 타입 세대는 직통계단 2개소 이용이 가능하여 대피공간 및 하향식피난구 설치가 제외됩니다.
- ※ 건축법상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세대의 실외기실 바닥에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2층 이상 세대의 실외기실에는 상부 세대의 사다리꼴 내려오는 공간 및 대피를 위한 동선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대피공간이 설치되는 세대는 대피공간 내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제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필로티상부층이 최하층일 경우 해당세대의 바닥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으나, 1층에 세대가 있는 2층의 경우는 설치가 됩니다.
- ※ 타입별로 세대분전반, 통신 단차함, 월 패드의 설치 위치 기준이 상이합니다. 건립세대에 설치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참고하시어 계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발코니, 실외기실 등 천장에 구조를 위한 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스위치, 콘센트, 월 패드류의 제품은 기능과 미관 향상을 위해 색상, 디자인, 버튼 구성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거실, 주방, 침실의 콘센트 중 일부는 대기 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됩니다.
- ※ 주방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기질 센서의 위치와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택홍보관, 분양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 자재의 제품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은 공사 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특허 및 의장등록 또는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사의 부도 등)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유사 디자인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디자인(색상, 무늬, 재질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주택홍보관, 분양 홍보물,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미포함 품목이 혼합되어 표현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 색채와 마감이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세대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 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단열공사 외 환기 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당사의 책임이 없음)
-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 창고 크기, 재질, 색상, 손잡이, 개폐 방식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공되는 마감재의 사양과 색상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주택홍보관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주방가구, 주방아일랜드장,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욕조, 위생도기 등과 같은 불박이류가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체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총량률의 거치 시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히 벽체 구조를 확인하고 견고한 방법으로 고정하시기 바라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 ※ 세대 내 목재문, 가구 및 디자인 월 등의 인테리어 시트는 자체 특성상 색상 및 문양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침실1,2,3의 외기면 벽체와 만나는 내부 벽체 모서리에는 도배하자 방지를 위한 줄눈이 시공됩니다.
- ※ 침실 및 욕실 도어 프레임의 사이즈, 재질, 단차, 형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분공사 시 침실 및 욕실도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되며,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목 창호의 하드웨어(경첩, 스토퍼, 등)와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인조대리석, 타일, 벽 패널, 거실 디자인 월, 복도 패널 등의 마감재는 나누기 및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하향식 피난구의 규격 및 사양, 위치, 열림(개폐)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드레스룸의 면적 및 평면형태는 타입별로 상이하며, 내부 가구류(화장대 및 일반 가구)도 세대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사이즈,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합니다.
- ※ 주방 창 프레임의 규격이나 소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주방가구 및 일반 가구는 단위세대 평면계획에 따라 타입별로 설치 위치와 디자인 및 내부 수납기능이 상이하며, 주방가구 싱크대 하부장 내부 및 렌지후드 상부장에는 각종 장비로 인하여 공간이 줄어듦 수 있습니다.
- ※ 주방가구(아일랜드장 포함)의 배치, 동선, 복도폭, 수납량 등은 세대 타입별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 주방 상판 및 벽체마감재의 이음 부분이 노출되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현관, 욕실, 발코니의 타일 패턴은 사이버 주택전시관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자재의 컬러나 무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천장 상부 몰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 단차함 및 전기 분전반 등의 설치 위치 및 수량과 디자인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욕실장 내부 수납 치수 및 인조대리석 선반의 마감 디테일(치수,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천장높이는 설비, 전기 등의 배관, 배선 공사 시 기능상의 이유로 높이 일부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추가선택품목 공사 미 선택 세대의 에어컨은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개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세대 내 에어컨 배관을 위해 거실에 스탠드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박스, 각 침실에는 벽부형 일반 에어컨용 냉매박스, 실외기실에 실외기 연결을 위한 냉매박스가 설치되며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하부세대로 피난을 위한 하향식 피난구가 일부 세대 실외기실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소음 발생 및 생활할 침해 피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화재 시 피난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 해당 세대, 하부 1개 층 세대는 개폐 시 알림 경보가 울리게 됨)
- ※ 추가선택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추가선택품목 및 평면 선택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타일 및 마감에 의한 줄눈나누기, 건축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 패드, 전기 분전반, 통신 단차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규(전기설비기술기준 편단기준 제171조) 변경으로 인해 세대 분전반이 세대 내 벽체에 매립되고, 분전반커버는 노출 시공됩니다. 위치 및 사양과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본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 비화장 발코니 및 실외기실 상부에는 슬라브나 천장 내부에 전기, 설비 시설물이 있으므로 타공 시 파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 추후 발코니 및 거실 빨래건조대, 벽걸이 TV 등의 설치 시 매립 배관 위치를 시공자가 관리소 보관 중인 준공도면을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부주의로 인한 배관 파손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 세대 내 벽체에는 세대 분전반 및 전열 기구 배관라인(보통 수직 형상)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래킷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 지양해야 합니다.
- ※ 세대 내 벽체에는 세대 통신 단차함 배관라인(보통 수직 형상) 구간에 대하여 못질 또는 브래킷 고정 등 벽체 파손행위 지양해야 합니다.
- ※ 아일랜드장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이 노출되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
- ※ 본 공사 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구획에는 일반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며, 관련 민원을 시공사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세탁공간의 세탁선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전동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의 설치장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주방 TV 및 욕실 스피커폰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 후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 시 냉장고 등 가전용 콘센트 위치는 추가선택품목 타입의 냉장고장 위치를 기준으로 설치됩니다.(일부 타입은 상이할 수 있음)
- ※ 101D, 101E 타입 세대의 세탁공간에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배치(수평배치)할 수 없는 구조로 상하배치만 가능하며,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환기는 전열교환방식이며 환기장비는 실외기실에 설치됩니다. 단, 84G, 84H 타입은 보조주방에 노출되어 설치되며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A, 84B, 84D, 101A 타입 세대의 세탁공간 일부 바닥에 바닥난방코일이 설치됩니다. ※ 84A, 84B, 84D, 101A 타입 세대의 드레스룸의 도어가 마설치계획이 된 이유는 인허가시(건축심의, 사업승인) 드레스룸 관통후 하향식 피난구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복층형 세대의 경우 상층부 배관이 저층부 천정에 설치되어 점검구가 설치되며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1동 12층 및 1002동 13층에 계획되는 101B 부부욕실 및 101C 공용욕실구간에는 층상배관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화장실 마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84C, 84F, 84G, 84H, 84I, 84K, 84L, 84M, 84복층형(N,O,P,Q,R,S,T), 101B, 101C, 101F 타입의 세탁공간은 외기에 면해있지 않아 별도의 배기팬이 설치 될 예정이며, 그 외 세탁공간에 외기에 면한 환기창이 설치된 세대는 별도의 배기팬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84F, 84A, 84K, 84L, 84M, 101B, 101C 타입의 가스계량기는 침실1 발코니에 노출 설치되어 이에 따른 조망권을 일부 해칠 수 있으며, 그 외 타입의 가스계량기는 세탁공간 및 실외기실에 설치가 됩니다. ※ 84G, 84H, 84I, 84J와 84복층형(N,O,P,Q,R,S,T)타입 세대는 공간구성법에 따라 별도의 현관 펜트리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R, 101C, 101F 타입 세대는 중문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로 추가선택품목 선택 세대에서 제외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K, 84L, 84M 타입 세대는 주방 가전기종식 식기세척기 설치가 불가능한 구조로 추가선택품목 선택 세대에서 제외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층형 세대의 상층부 및 101D, 101E 세대의 드레스룸 선반하부, 화장대 하부장, PS내부 등에 상층부 난방용 온수분배기가 설치되어 일부 사용상의 공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PS내부에 설치될 경우 벽체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침실 및 거실에는 난방용 온도조절기가 설치됩니다. 단, 84N, 84O, 101F 타입의 상층부 거실-2에는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침실 및 거실에는 환기를 급기 또는 배기 디퓨저가 설치됩니다. 단, 84N, 84O, 101F 타입의 상층부 거실-2에는 별도의 디퓨저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시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시설물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사업시행인가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온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차량 출입구 및 램프 지붕의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구는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 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까지 차량 동선이 단지 출입구를 통하여 진입하므로 입주차 차량과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제연헬륨 등의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지상돌출물은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하게 할 수도 있고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헬륨 및 기전실(1003동)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기계기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문주가 별도 없습니다. 사업승인조건상 고덕 강일 전체단지는 문주를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되어 설치가 불가하오니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02동 지하층에 위치한 지하주차장 일부 주차면이 외부선로에 면하여 개방되어 있어 계절의 영향에 따라 우천시 비둘이침과 겨울에 눈이 쌓일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실내 휘트니스 등)의 운영 및 관리는 입주차 부담으로 운영됩니다. ※ 주거 공용부분인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옥상, 천실 및 홀 등은 주거 공용부분으로 개인적으로 전용화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질조사 등을 통해 지하수위가 높은 경우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영구배수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관리비용(하수도 사용료 포함)은 입주차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가 외부 가로수로 인한 조망 등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상가 외부에 블라드, 가로등 보차로 구분용 웍스, 각종 게시판, 버스 쉼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가 및 지상 주차장 주변부 녹지대는 면적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용 복도의 사용시간은 단지 내 상가 협의회(가칭)과 단지 내 주민협의회(가칭)의 협의에 따라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재난, 안전, 소방과 관련하여 관련 법에 따라 시공 시에 일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도서 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차구획선 표기 시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역은 기본 일반주차 구역으로 설치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확장형 주차구역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 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시 단지 주변의 레벨 변경에 따른 단지 내 레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일부 구간에 강도 소방서 협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용 소화배관이 설치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외부개방계획 관련 주요 고지사항 ※ 본 아파트는 건축심의 조건에 따라 입주차지기간 종료일부터 5년 이상 일부 주민공동시설을 외부에 개방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업주체는 사용감사 전 독립된 운영자와 사용대차계약(운영위탁계약)을 통하여 운영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아래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본 아파트 청약을 진행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계약 시 관련 위탁동의서의 작성 및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1) 상기 사용대차계약(운영위탁계약)에서 사업주체의 권리 및 의무는 입주차대표회의 구성 후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차대표회의로 승계 됨 2) 외부개방 주민공동시설의 이용금액 및 운영안은 운영시점의 상황(물가상승률, 최저시급 인상, 코로나19와 같은 정부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차대표회의 구성 후 상기 사용대차계약은 기존 약정기간동안 변경할 수 없으며, 주민공동시설 개방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명기하고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단의 약정기간 동안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리비는 공동부과방식입니다. ※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상기 조건을 계약내용에 반영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외부개방계획에 따른 외부인 이용금액 및 운영안은 운영시점에 따라(물가상승률, 최저시급 인상, 코로나19 와 같은 정부지침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개방계획에 따라 일부 세대(1002동 221호~230호) 앞 주거공용부분이 외부개방에 이동동선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부개방계획에 따라 1001동 16호라인 1층 및 지하1층에 1층~지하1층간 운행하는 옥외엘리베이터 1개소와 1001동 13호라인 1층과 1002동 28호라인 2층 인근에 공동보행통로를 가로질러 1001동과 1002동을 연결해주는 브릿지(+옥외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외부개방의 이동동선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역주인 개방시설 : 건축물형과 조경시설물 형태로 개방되며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독서실, 맘스카페, 플레이가든, 공방, 개인스튜디오(리빙랩), 커먼스팟#1~7(키즈스튜디오, 공유서재, 바이크카페, 런탈하우스, 탁구장, 시니어릴렉스존, 당구장), 커먼스팟#8~15(오픈형)팜, 오픈마켓, 전방카페, 모빌리티공유소, 시니어취미존, 바이크스테이션-1, 바이크스테이션-2, 오픈카페) • 입주 후 5년간 관련비용 지원, 입주 6년차 이후 관리비 부과 예정입니다. ■ 홍보물 ※ 입주차자모집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치 조정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사업 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당사와는 무관하며, 사업 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기관의 사업으로 추진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명칭**
-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 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주택홍보관**
- ※ 사이버 주택전시관은 84A·D·E·G·I·K·L, 101A·B·C·D타입이 제작되었으며, 미제작 타입인 84B·C·F·H·J·M·N·O·P·Q·R·S·T, 101E·F타입은 기타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추가선택품목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DP)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표현된 제품은 자체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사이버 주택전시관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전기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추가선택품목(II)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미표현 된 84B·C·F·H·J·M·N·O·P·Q·R·S·T타입은 제작되어 있는 84A·D·E·G·I·K·L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미표현 된 101E·F타입은 제작되어 있는 101A·B·C·D타입의 마감자재에 준하여 시공됩니다.
 - ※ 사이버 주택전시관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후 동영상 및 사진파일로 보관할 예정입니다.
 - ※ 사이버 주택전시관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표현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사이버 주택전시관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PVC 창호, 목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사이버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표현되는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주택홍보관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사이버 주택전시관의 외부창호는 내용급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사이버 주택전시관의 주방기구 및 수납공간은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표현되지 않은 세대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 위치 등이 건립세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5항 및 「사이버 건분주택 운용기준」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로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운영하였으며, 차후 사이버 주택전시관 관련 추가 시정조치 등을 사업주체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주택홍보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 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택홍보관의 단지모형,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홍보관에서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홍보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홍보물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사항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도서에 따라 시공됩니다.
 -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 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 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홍보관의 모형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 주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주변 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주변의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 ※ 2019년 8월 20일부터 체결하는 분양권 계약자는「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분양사무실에 비치된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주택홍보관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사이버 주택전시관 : www.elife.co.kr

■ 주택홍보관 위치 및 분양문의 : 서울시 용산구 독서당로29길 5-6, F동 4층 (1644-8228)